

<목포시 공고 제2025-997호>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제 3 자 제 안 재 공 고

2025. 06. 27.



목 포 시

목 차

[전 문]	1
제 I 부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1
제 1 장 용어의 정의 및 해석	1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제2조 본 공고의 해석상 우선순위	7
제 2 장 사업제안의 범위	8
제3조 사업의 추진 방식	8
제4조 사업의 범위	8
제5조 성과요구 수준	9
제 3 장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12
제6조 관련 법규의 준수	12
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12
제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14
제9조 사업제안 방법	15
제10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6
제11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20
제12조 위험의 분담	24
제13조 사업의 성실히행보장	26
제14조 주무관청의 지원과 권한위임	30
제15조 기타 사업 시행 기준	31
제 4 장 협상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32
제16조 사업제안자의 평가	32
제17조 사업제안자의 지정 (실시협약 체결)	32
제18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34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35
제20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35

제 5 장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36
제21조 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 장소	36
제22조 제3자 제안공고문 공고	37
제23조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안내	37
제24조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37
제25조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38
제26조 비용부담	39
제27조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40
 제 II 부 사업제안서 작성	 47
제 6 장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	47
제28조 사업제안서 작성의 일반 지침	47
제29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49
제30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50
제31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54
제 7 장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작성	55
제32조 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	55
제33조 기본사항	56
제34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57
제35조 사업수행능력	57
제 8 장 2단계 평가서류 작성	58
제36조 기술 부문 평가서류 작성	58
제37조 가격 부문 평가서류 작성	61
제38조 설계도서	62
제39조 부속서류	62
 제 III 부 사업제안서의 평가 등	 63
제 9 장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63
제40조 사업제안서 평가의 전제조건	63
제41조 사업제안서 평가방법	64
제42조 1단계 평가항목 기준	65

제43조 제출서류 심사	67
제44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69
제45조 2단계 평가 일반기준	73
제46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74
제47조 기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	76
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82
제49조 감점기준의 운용	83

〈부록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부록2〉 기술적 요구사항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공고 전문

공 고 의 목 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대한민국 법률 제20409호를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이하 ‘「민간투자법」’ 이라 함)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의 규정에 따라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조건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민간투자법」 시행령(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5089호를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함으로써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갈음하고, 제3자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최초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목포시장(이하 ‘주무관청’ 이라 함)의 투자방침 및 지원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함.

제 I 부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제 1 장 용어의 정의 및 해석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1) 건설기간: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2) 건설기술 진흥법: 대한민국 법률 제19967호 「건설기술 진흥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 (3) 건설보조금: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 주무관청이 재정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 (4) 건설사업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정해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또는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함.
- (5) 건설사업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 (6)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 법률 제19591호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 (7) 건설이자: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하 “본 사업시설”이라 한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건설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말함.
- (8) 고정운영비: 운영비용 중 수요의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변동 운영비용을 제외한 운영비용으로 함.
- (9) 공공부문: 「민간투자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함.
- (10) 공사기간: 본 사업시설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11) 공사도급계약: 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들 간에 체결되는 본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위한 계약을 말함.
- (12) 공사착수일: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착공보고서상의 공사착수일을 말함.
- (13) 관계기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 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함.
- (14) 관리운영권: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주무관청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함.
- (15)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 (16) 국가계약법: 대한민국 법률 제2040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 (17) 대표출자자: 사업제안자의 출자자를 대표하는 1인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서,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18) 물가변동비: 가격산출 기준시점(2021년 1월 1일)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함.
- (1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공고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말함.
- (20) 민자적격성 재조사: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민자적격성 재조사)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는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말함.
- (21) 법령: 본 공고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함.
- (22) 법령 등: 본 공고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본 사업 관련된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공고, 계획, 기타 정책 등을 말함.
- (23) 변동 운영비용: 운영비용 중 수요의 변동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명확한 운영비용으로, 본 공고에서는 전력비, 약품비, 연료비, 상수도비 등을 말하며,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함.
- (24) 보상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내지 제79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25) 본 사업: 본 공고문에서 사업제안의 범위로 제시된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을 말함.
- (26) 본 사업부지: 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함.
- (27) 본 사업수입: 본 사업시행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부대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의 합계를 말함.
- (28) 본 사업시설: 본 공고문에서 특정된 시설로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말하며, 부속·부대사업에 따른 시설 및 대체시설을 포함함.

- (29) 부대사업: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함.
- (30) 부속사업: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함.
- (31) 분기: 해당연도의 1월1일부터 3월31일, 4월1일부터 6월30일, 7월1일부터 9월30일 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32)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제안서를 말함.
- (33) 사업수익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세전(세후는 병기) 실질수익률(IRR)을 말함.
- (34) 사업시행자: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함.
- (35) 사업제안자: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함)를 말함.
- (36) 사업이행보증: 실시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본 사업시설의 적기 건설을 도모하며,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도중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함.
- (37) 사용료: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본 사업시설의 이용대가를 말하며,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용(유지관리비 및 대수선비 포함)과 총민간사업비에 대한 회수비가 포함된 금액을 말함.
- (3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함.
- (39)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고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함.

- (40)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2021년 1월 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계산 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공고문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41) 시공사: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함.
- (42) 실시계획: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을 말함.
- (43) 실시협약: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말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 (44) 예비비: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함.
- (45) 우선협상대상자: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선정된 협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주무관청과 다른 사업제안자에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함.
- (46) 운영기간: 운영개시일(준공일의 익일)로부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함.
- (47) 운영사: 본 사업에 운영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사로서 사업시행자와 본 사업시설의 직접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한) 자를 말함. 단, 운영사가 복수일 경우 한 개 이상의 전문운영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48) 유지관리: 본 사업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등을 통하여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함.
- (49) 자금재조달: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자금재조달로 인한 이익공유는 자금재조달 시점의 가장 최근 공표된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름.
- (50)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공표하는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말함.
- (51)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s): 출자자 중 건설출자자(설계회사 출자자, 시공회사 출자자), 운영회사 출자자를 제외한 배당과 원리금 수익을 목적으로 본 사업에 투자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함.

- ① 기관투자자: 민간투자법 제2조 제17호 각 목(카목 제외)에 따른 자 및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 ② 시설립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 ③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 (52) 재정지원: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것을 말함.
- (53) 전략적 출자자: 재무적 투자자를 제외한 건설, 운영 등 본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투자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함.
- ① 건설출자자: 본 사업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출자하는 자
 - ② 운영출자자: 본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출자하는 자
 - ③ 기타출자자: 건설출자자와 운영출자자 외의 본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자기자본을 출자하는 자
- (54) 전문운영사: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평가를 통과한 복수의 운영사 중 운영실적 등을 보유한 각각의 운영사를 말함.
- (55) 제세공과금: 본 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면허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공과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함.
- (56) 주무관청: 본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목포시장을 말함.
- (57)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함(실시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시 그 변경기간을 반영하여 조정).
- (58) 지방계약법: 대한민국 법률 제1963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 (59) 지역건설산업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목포시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함.

- (60)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 또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 또는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자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 (61) 총민간사업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액(건설보조금), 보상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함.
- (62) 총민간투자비: 총민간사업비 및 그에 대한 물가변동비와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의미함.
- (63) 총사업비: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2021. 1. 1. 불변가격 기준).
- (64) 총투자비: 총사업비와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함.
- (65) 출자예정자: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함.
- (66) 출자자: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함.
- (67) 협상대상자: 「민간투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순위를 정하여 지정한 자로서 주무관청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제2조 본 공고의 해석상 우선순위

본 공고 및 이를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함.

- (1) 민간투자법
- (2) 민간투자법 시행령
- (3) 본 공고
-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사업제안의 범위

제3조 사업의 추진 방식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함.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임.

제4조 사업의 범위

- (1) 사 업 명: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2) 위 치: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일원(환경에너지센터 내)
-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8개월 포함)
- (4)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5) 사업규모

구 분	시 설 규 모
건설 및 운영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80톤/일(300일/년) · 하수찌꺼기처리시설: 90톤/일(300일/년)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90톤/일(300일/년)
	- 폐수처리시설: 1식(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기준)

- ①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및 장래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② 본 사업시설 반입대상 폐기물은 목포시 하수찌꺼기, 음식물류폐기물과 신안군 음식물류폐기물로 구성됨. 폐기물반입량 등은 사업제안자가 검토하여 자율제시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6) 추정총사업비: 70,133백만원(2021년 1월 1일 불변가격기준, 보상비 제외)
- ① 매입세액 불공제액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의 경우는 본 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② 사업제안자는 총사업비를 위 금액(70,133백만원) 이하로 제시하여야 하고 초과 제안 시 실격 처리함.
 - ③ 추정 총사업비 및 운영비는 각 시설별(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함께 추정 총사업비와 운영비도 작성·제시하여야

함. 단, 운영비용 중 인건비 및 제경비는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시함.

④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공사의 착공시기는 2024년 1월 1일자로 가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7) 사업 부지는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철거 후 지정된 부지(부지경계 별도 제공) 내에 설치하며, 철거비는 본 사업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고 철거계획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수립할 예정이며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제5조 성과요구 수준

(1)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이 아래와 같은 성과요구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제안을 하여야 함. 다만 실제 사업추진 시 적용할 성과요구수준은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2)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은 각종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등)과 지침 예규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내의 지방기준 이상을 준수하여야 함.(공고일 기준 법령에 따른다. 단, 개정 예정법률 포함)

(3) 건설공사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전라남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023~2027), 목포시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목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등의 자료 등과 부합되도록 하고 설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4) 본 사업은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지침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기술지침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6)」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은 사업제안자가 검토하여 자율 제시하되 법정 기준치(공고일 기준 법령에 따른다. 단, 개정 예정법률 포함) 이하로 제안하여야 함.

(5) 사업제안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13,740Nm³/일(메탄함량 60%) 이상이 되도록 공정구성을 계획하여야 하며, 바이오가스는 내부 활용으로 제시하되 향후 주무관청의 외부활용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를 판매할 경우에는 사용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판매주체, 판매량 및 기준

가격 등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6) 본 사업시설의 가동일수는 300일/년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7) 본 사업과 관련된 악취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수질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은 사업제안자가 검토하여 자율 제시하되 공고일 기준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제안하여야 함.

- ① 본 사업시설에서 시운전 및 운영기간중 발생하는 공정폐수 등 연계처리수 (매립장 침출수 200m³/일 포함)는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기준 이내로 제안하여야 하며, 연계처리를 위한 기준 등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기준

구분	BOD	TOC	SS	T-N	T-P	비고
부하량 (kg/일)	175.0 이하	200.0 이하	27.0 이하	117.0 이하	13.2 이하	연계유량 430.4 m ³ /일 기준

주1) 폐수처리시설 미적용시 평가에서 제외함.

주2) 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비는 제외하되 폐수연계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비용(연계관로 및 부대시설 일체)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 ② 본 사업시설에서 시운전 및 운영기간중 발생하는 이물질 및 협잡물은 목포시 위생매립장에 반입할 계획이므로 처리비는 제외하되 운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다만, 향후 주무관청의 소각시설 운영에 따라 소각 처리로 변동될 수 있으며 반입 조건, 비용 등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③ 본 사업시설 시운전 및 운영기간중 발생하는 소화탈수찌꺼기는 목포시 하수 슬러지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계획(함수율 80% 이내)으로 처리비용은 제외 하되 운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④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립장 침출수는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 처리될 수 있도록 본사업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⑤ 본 사업시설의 공정폐수 등에 대한 연계처리 계획은 향후 목포시 환경 에너지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통합처리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8) 사업제안자는 제시한 보증치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위반할 경우 주무관청에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함.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납입방법 등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서 정함.

- (9) 처리시설 부지는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일원(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지정된 부지(부지경계 별도 제공) 내에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① 사업부지는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위치하여 인근에 하수슬러지건조시설 등 처리시설이 집약화되어 있으므로 금회 철거(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시설) 대상 부지 내 이송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설해야 한다면 본 사업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② 가설사무소 부지 및 자재 야적장 부지는 환경에너지센터 내 가용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10) 초기우수처리시설은 기존 설치된 시설을 활용하되 시설 공사중 불가피하게 시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본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11)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관련 내진설계기준(KDS 등)을 반영하여야 함.
- (12) 「건설기술 진흥법」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에 명시된 관련기관으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
- (13) 본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제안자는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14) 사업제안자는 [부록 2] 「기술적 요구사항」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 3 장 사업 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제6조 관련 법규의 준수

- (1) 본 사업과 관련되어 체결되는 실시협약 등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됨.
- (2)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 제안공고 시점에 유효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악취방지법 등 사업 관련 모든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3) 본 사업 실시협약서 작성은 한글본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문본으로 작성할 수 있음. 단, 한글본이 해석상 우선임.

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 (1)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① 사업제안자간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형태를 갖게 할 수 있음. 협상에서 이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경도 협상에서 확정함.
 - ② 설립예정법인은 사업제안서에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③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동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신설되는 법인은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시된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을 지켜야 함.
 - ④ 본 사업을 제안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지분율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 내외국인간에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①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② 사업제안자, 사업제안자의 출자(예정)자, 설계.시공.운영 등 본 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은 본 민간투자사업에 이중으로 참가할 수 없음.
- ③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④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 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⑤ 다만, 공공부문 출자, 보험가입 등 안정적 민간투자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 실시협약체결 시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어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0, 운영기간 중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⑥ 사업제안자는 본 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와 금액 등은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⑦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출자자 가운데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사업제안자의 대표출자자로 지정하고, 대표출자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 사업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대표출자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함).
- ⑧ 본 사업 실시협약 체결 이전까지 상기 자기자본비율 산정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변경이 확정될 경우 그 변경사항을 본 사업 실시협약에 반영할 수 있음.
- ⑨ 민관 합동법인 형태로 사업시행자를 구성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출자자 내역, 출자비율 등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3)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동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4) 제3자 제안공고일 기준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받는 자는 본 사업에 사업제안자(출자자 포함)로 참여할 수 없으며, 「민간투자법」에 따른 자격요건은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5) 사업제안자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관내 지역건설산업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제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 (1) 출자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자 전체를 단일출자자로 간주함. 이 경우,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공동 출자하는 경우 1명의 대표 출자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 출자자만이 공동출자자를 대표하여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함.
- (2) 사업제안자는 준공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예정)출자자 또는 (예정)출자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함. 단, 출자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이 가능함.
- (3)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동일기업 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의 경우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함.
- (4)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또는 (2)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함.
- (5) 출자지분 변경이 사실상 자금제조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자금제조달 관련 규정에 따름.

제9조 사업제안 방법

1. 사업제안 방법

- (1)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본 공고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의향서,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 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②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 ③ 자기자본(출자금) 투자(추가출자 및 후순위주주차입금 포함)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다만, 출자자가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④ 재무적 투자자가 사업제안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없고,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⑤ 출자자별 출자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 ⑥ 차입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다만, 조건부 대출확약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대출약정서 사본으로 교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⑦ 차입 이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계획
- (2)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명의로 하여야 함.
- (3)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및 공사기간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제안서 제출 시 관련시설물의 시공자 선정방법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4) 출자자가 시공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출자자(시공회사 출자자) 없이 전략적 투자자 또는 재무적 투자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의 예정공사에 대한 시공주체, 시행계획 등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5)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6)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이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숫자로 사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여야 함.

제10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 기본적인 투자 및 운영 조건

- (1)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를 결정하는 다음의 공식을 기본으로 함.

$$\sum_{i=0}^n \frac{CC_i}{(1+r)^i} = \sum_{i=n+1}^N \frac{OR_i - OC_i}{(1+r)^i}$$

- n : 본 사업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CC_i : 본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단,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OR_i : 매년도의 운영수입
 OC_i : 매년도의 운영비용(단, 법인세 제외)
 r : 사업의 세전실질수익률(IRR)

- ① 사업수익률은 세전수익률로 제시(세후수익률은 병기)하여야 하며, 사업 제안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자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함.
- ② 사업수익률은 ①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사업수익률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에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이 경우 실시협약으로 결정된 수익률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조정되지 않음. 다만, 재정지원 규모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함.
- (2) (1)의 공식에서 총민간사업비(CC_i), 운영수입(OR_i), 운영비용(OC_i) 등의 불변 가격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총사업비의 산정 및 변경

- (1) 사업제안자는 협상과정에서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었을 경우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함. 단, 제3자 제안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설계기준 및 관련법령.제도 등의 변경으로 합당하게 추가되는 항목 및 비용 또는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상과정에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 (2)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음.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 ①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 ②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③ 법령,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④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⑤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⑥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 (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건설사업관리비 금액보다 실제 건설사업관리계약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 금액이 더 낮게 체결되어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 상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함.
- (4) 총사업비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함.
- ① 실시협약 체결 시 공사비 변경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법정 정산 경비 등 변경이 인정되는 정산항목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②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 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함.
 - ③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 ④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금액을 산정함.
 - ⑤ 본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시점 또는 총사업비 변경 시점에 주무관청은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에 따라 의뢰하여야

-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하여 자료 제출 및 절차 수행에 협조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의 수익 또는 손실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가능성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함.
 - (6) 협약당사자는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3. 최초 사용료 및 매년도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 (1) 본 사업시설의 운영 개시연도의 최초사용료는 건설기간 중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2) 운영 개시연도 이후의 매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산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함. 다만, 사용료 산정 주기는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3) 사용료 결정방법 및 조정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4)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 및 사용료,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운영비용의 조정

- (1)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실제 운영비용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2)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추가출자 등의 방법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하여야 함.
-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또는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운영비용의 추가 등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초과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

비용이 초과된 경우 이는 재정지원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나 사용료의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4)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사용료의 인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세법 등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운영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5) 사업기간 중 법인세법의 개정 등에 따라 법인세율의 증감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6) 운영비용 중 대수선 항목에 대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전 미집행한 항목은 정산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5. 재원의 조달 및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1) 자금 차입분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대출약정서로 대체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 시점과 금융약정의 체결 시점을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실시협약의 차입금 조건과 최초 금융 약정의 차입금 조건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도록 함.
- (3) 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 및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조건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4) 자금재조달 및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을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 ③ 자금재조달의 요건, 이익산정 방법 및 처리, 이익공유 방법 및 절차 등 자금재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이 발생하는 시점의 가장 최근에 공고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름.

제11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 시설물 계획

- (1)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및 장래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적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2) 사업제안자는 시설설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2. 실시계획 수립

- (1)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수립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하안전영향평가심의 등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환경대책, 지하구조물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 발굴조사 등)를 하여야 하고 문화유적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단, 발굴조사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할 예정임.
- (4) 사업시행자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기간, 관계기관 행정 인.허가 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공정관리 계획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공사 착수 및 시행

- (1)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이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전 주무관청에 공사 착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2) 공사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공사의 준공 및 확인

- (1)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기한 내에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여 주무관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 ① 시설의 준공일은 사업시행자의 공사 준공보고서 접수 후, 주무관청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자의 시운전 입회하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부한 준공확인필증상에 준공일로 기재된 날을 의미함.

- (2) (1)에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그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3)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전이라도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시설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의 준공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음.
- (4)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함.

5. 소유권의 귀속

- (1) 「민간투자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그 귀속시기 및 방법 등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은 주무관청에 귀속됨.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의무할당제(RPS) 제도에 도시가스가 편입될 경우,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에 대한 권리는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발생수익은 운영수입 및 사용료 산정 시 반영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주무관청이 본 권한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출자자에게 우선 판매할 수 있음.

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설정

- (1)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작성하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20년을 설정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작성함.

- (2)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준공한 경우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인가를 거쳐 확정된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의 무상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운영기간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준공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함.
- (3)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이 조기 준공되는 경우 조기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준공 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수익 및 비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7. 관리운영권의 부여 및 인계

- (1)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이 경우 관리운영권의 소멸 또는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에 광고물 등의 수익성시설 또는 제반공급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수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함.
- (3)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년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시설의 수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함.
 - ①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도록 함.
- (4) (3)의 시설점검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 전까지 자기 부담으로 이를 수리·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그 가액을 운영기간 동안 전액 상각하고, 운영기간 종료 시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인계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8.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이 건설 당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도록 본 사업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함.
- (2) 본 사업시설의 준공 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 개량 및 수선비(하자보수기간 중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제외)는 시설의 운영비용으로 계상함.
-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6개월 전까지 유지보수계획 등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중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①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 (6)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무관청이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협약(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위험배분 원칙에 따르도록 함.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실시협약의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 원칙에 따르도록 함.
- (7)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 종료되면 주무관청에 본 사업시설의

- 운영설비 및 시설운영과 관련되는 각종 자료 등을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 (8) 사업시행자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드시 직접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9) 사업시행자는 전문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 전문운영사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운영사 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0) 사업시행자는 전문운영사에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임·위탁하였음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운영비용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문운영사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의무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

9. 건설보조금 초과시 절차

- (1) 사업제안자는 본 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건설보조금 규모를 협상과정 및 실시협약 체결 후 증액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주무관청이 부득이하게 건설보조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에 따라 처리함.

10. 기타 기술사항

- (1)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을 계획 또는 건설할 때에는 관계법령, 지방시,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 등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설에 관련된 제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2)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은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에 따름.
- (3)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시공기준이나 공법, 본 사업시설의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협약으로 정함.

제12조 위험의 분담

1. 위험분담의 원칙

- (1)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사업자 귀책인 위험 및 불가항력인 위험(천재.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국내의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 (2)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 또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위험을 배분함. 아래 ①, ②의 보험은 사업제안서 작성 시 반영하고, 보험 유형별 최종 반영 여부 또는 그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으로 최종 확정함.

① 건설기간 중: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 이행보증보험 등

② 운영기간 중: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 안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

- (3)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정부가, 사업자귀책인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항력인 위험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되,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

- (4)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위험분담분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용료의 조정이나 사후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음.

2. 매수청구권의 인정

- (1)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 중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당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2)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매수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청구 당시 본 사업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 부대사업시설, 영업권 등의 적정가치와 매수청구권의 행사 사유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매수금액의 산정 등은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7조의 해지시지급금 규정에 따를 수 있음.

- (3)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3. 실시협약 중도해지의 조치

- (1)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귀책 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협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2) 건설기간 중에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 (3)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에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하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주무관청은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다만, 해지되는 시점에 확정된 주무관청의 환수금은 해지시지급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함.

제13조 사업의 성실히행보장

1. 사업의 성실히행 감독 및 행정처분

- (1)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① 부실시공 방지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주무관청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자금집행 실적 및 계획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실적 및 계획 제출 요구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3) 주무관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실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4)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51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현장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건설사업관리

- (1)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격한 자를 건설사업관리자로 지정하며, 주무관청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지정한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를 수행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및 건설사업관리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위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실시협약으로 정함.
- (3) 공정한 비교 평가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비(위험담보 손해배상보험 가입비용 포함)는 3,300백만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용은 195백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비는 80백만원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4) 사업시행자는 적정한 건설공사 품질유지를 위해 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한 시공을 하여야 함.
- (5)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3. 민원처리

- (1)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 가능한 민원을 예상하여 그 민원의 발생가능성, 예상 민원에 대한 처리 계획, 민원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2) 본 사업의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또는 우선협상 대상자는 성실히 협의하도록 함.
- (3) 민원의 발생 원인과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민원의 처리 책임 주체와 민원처리 비용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①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설계, 시공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함.
 - ② 주무관청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보상업무)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 처리는 주무관청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함.
 - ③ ① 및 ② 에도 불구하고 협약 당사자는 분담 비율을 협의하여 민원 처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
- (4) 위 (3)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민원의 처리를 제외하고, 본 조에서 주무관청이 부담하기로 하는 민원처리비용은 총사업비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시공 중 위험관리

- (1) 사업제안자는 건설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관련된 선진기술의 도입, 시공안전 관리계획 및 보험의 가입 등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 대비책 및 사후수습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적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이행보중 및 지연배상금

- (1) 본 사업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보증금 산정에 국한하여 실시협약 체결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함)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귀속됨.
- (2)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1)의 보증금을 실제 납부할 경우에는 실시협약체결일

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보증금을 납부하며,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3) 사업제안자는 (1)에 의한 보증금을 포함한 사업이행 보증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공사기간 내에(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함.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함(단, 지장물 및 용지보상 지연 등 주무관청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 예외로 함)

② ①의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 시(준공 확인필증 상에 준공일로 기재된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함.

가. 1일당 지연배상금은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가격 기준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함.

③ 주무관청은 지연배상금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④ 사업이행보증 및 지연배상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협약으로 정함.

6.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안전 및 유지관리

(1) 사업시행자는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최대한 도모될 수 있도록 안전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시설이용 가능성 등 성과 평가 방안(재정지원액 차감 등 사항 포함)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제14조 주무관청의 지원과 권한위임

- (1) 사업제안자는 현행 민간투자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주무관청이 행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업무 지원 등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에 관한 요구사항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 (2) 사업제안자는 본 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에서 제안한 재정지원보다 주무관청에 불리하게 협상 과정에서 제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재정지원이 본 공고에 비하여 정부에 불리하게 되어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민자적격성 재조사 등의 검증을 거쳐야 함.
- (3)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음.
- (4) 사업제안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한 경우 그 규모나 지원방법 등 주무관청의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5) 행정 및 재정지원 요구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협상시 추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제안자가 감수하여야 함. 단, 사업제안 이후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제도 등의 변경, 기존 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으로 합당하게 추가되는 항목 및 비용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 (6)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의 사항은 「민간투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7)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사항은 주무관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함.
- (8) 본 공고 이후에 민간투자법령이 개정되거나 정부가 확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지원조치는 관련법령 및 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적용할 수 있음.
- (9) 사업제안서 작성 시 「전라남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목포시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 「목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는 사본을 활용할 수 있음.
- (10) 주요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으며(제3차 제안공고 현재) 협상 시 결정됨.
 - 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 가.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나. 건설보조금은 본 사업의 재정지원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원으로 구성되며, 사업제안자는 이를 구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다. 건설보조금은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잔여 공사비 공정률 비율로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단, 실제 지원시기와 금액은 공사공정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시기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제15조 기타 사업 시행 기준

1. 부속사업 계획

- (1)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에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2) 사업제안자는 부속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부속사업 계획의 수용 여부를 결정함.
- (3)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부속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손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손익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처리함.
- (4) 기타 부속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등을 참고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2. 부대사업 계획

- (1)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계획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3. 경미한 수익성 사업

- (1)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제 4 장 협상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6조 사업제안자의 평가

- (1)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평가득점이 가장 높은 사업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①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 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②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본 공고문에 명시된 절차와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함.

제1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협약 체결)

- (1) 협상대상자의 순위는 사업제안자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시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제안자 중 평가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정함. 합산한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가격부문, 기술부문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으로 함.
- (2)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건설·운영·법률·금융 등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3)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타결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 ①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당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최대출자자 및 재무적 출자자(복수인 경우 대표 재무적 출자자)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시켜야 함.
 - ②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주된 금융기관 등을 협상에 참여시킬 수 있음.
- (4)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순위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 ① 우선협상대상자가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5) (4)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와 기술점수 배점의 70%에 미달하는 등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6) 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 조건을 반영하여 민자적격성 확보 여부를 재검증하고,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7)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결과 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들) 지정을 철회하고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음.
- (8) 협상대상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주무관청의 지원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협상할 때 요구할 수 없음. 특히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건설사업비, 재정 지원금, 수익률 등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본 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에서 상향 조정하여 요구할 수 없음.
- (9)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나 그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할 경우,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음.
- (10) 본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공고일 이후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사업여건의 변화로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공고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조건을 토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됨.
- ①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등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에 명시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단가에 대한 별도 검토는 생략할 수 있음.

가. 설계VE 수행 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친 경우

- 나. 주무관청이 재정사업 실적단가에 준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 다. 추정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의 사업
- 라. 기타 정형화된 사업으로 유사사업의 총공사비 수준에 비추어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제18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고, 1회(6개월 이내)에 한해 협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함. 협상기한 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제3자 제안 공고, 민간투자대상사업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2) 협상대상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주무관청의 지원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협상 할 때 요구할 수 없음. 특히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총사업비, 재정 지원금, 수익률 등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본 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에서 상향 조정하여 요구할 수 없음.
- (3) 본 공고에 따른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후 관련법령의 변경이나 사업여건의 변화로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공고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조건을 토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됨.
- (4)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등을 전문기관(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
- (5) 본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추정 수요량이 30% 이상 감소되는 경우 등의 협상단계에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민자적격성의 확보여부를 재검증함.
- (6) 사업추진 단계에서 (5)와 같은 조건변경에 달하지 않았더라도 총사업비의 증가 및 수요량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변경 협약을 위한 협상 포함)시 적격성 확보여부를 검증하여 실시협약(변경 실시협약 포함)을 체결함.
- (7)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민간

투자사업기본계획 제57조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무관청의 수요예측재조사에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 (1)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결과 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음.
- (2)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① 민간투자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②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으로 인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3) 사업제안자가 허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제20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연장기한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2)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설계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3)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도면(실시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4) 행정절차 및 관리청의 보완요구 사항 이행조건을 실시설계 시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 (5)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6)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실시
협약상 총사업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에
추가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제 5 장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제21조 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 장소

- (1) 공고기간: 제3차 제안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간
- (2) 제출일시
- ①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 2025년 07월 27일(공고일 익일로부터 30
일째 되는 날)
 - ② 2단계 사업제안서(기술·가격) 제출: 2025년 09월 25일(공고일 익일로부터 90
일째 되는 날)
-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평가결과 단독으로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통과된 경우 해당 사업제안자는 2단계 사업제안서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3) 접수마감: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① 접수장소: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3)
-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 사업제안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채직증명서, 위임장(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4)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제22조 제3자 제안공고문 공고

- (1) 사업제안에 필요한 본 공고사항은 관보와 3개 일간지 및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병행 게재함.
- (2) 본 공고의 내용 중 오류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 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주무관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공고를 하며, 연장되는 공고기간은 정정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제23조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안내

- (1) 본 사업의 공고일 익일부터 제출일시까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함.(문의: 목포시 자원순환과, TEL 061-270-8585)
- (2) 관련자료 열람 및 배포
 - ① 열람자료:
 - 전라남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 목포시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
 - 목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부지경계가 표기된 도면
 - 최근 5년간 목포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시설 운영자료 및 신안군 음식물류폐기물시설 운영자료
 - ② 열람기간: 2025년 09월 25일(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까지
 - ③ 열람장소: 목포시 자원순환과 (☎ 061-270-8585)

제24조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1)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양식34> 제3자 제안공고문 등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 ※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제25조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1)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평가단으로 하여금 2단계 평가를 시행하게 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제안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타결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

① 평가단은 본 공고에 명시된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등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함

(2) 1단계 평가 결과통보

① 1단계 평가는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접수일 익일로부터 7일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자(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3) 2단계 평가 결과통보 및 협상대상자 지정

①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주무관청은 평가결과를 사업제안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함.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평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평가결과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 발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통보함.

③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하여 사업제안자에게 서면 통보함. 다만, 주무관청에서 채점결과를 미리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채점결과 등위를 평가완료일에 우선 구두로 발표하고, 협상대상자 지정은 추후에 서면으로 통보함.

④ 평가과정을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이 주무관청이 동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가. 단,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음.

나. 협상대상자는 관계법령으로 인정되는 사항 또는 사업제안서를 통한 정부 지원 요구사항을 제외한 다른 사항을 협상 시 요구할 수 없음.

제26조 비용부담

- (1) 사업제안서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함.
- (2)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계획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함.
 - ①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시하는 경우
 - ② 사업계획 평가결과 탈락자가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부문 총 배점의 100분의 70미만이거나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 (3) (2)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에 대해 탈락자별 아래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지급함.
 - ①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 ②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

※ 동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4) 제안비용 보상금은 주무관청의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함.
- (5)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이후 탈락자가 제안비용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탈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탈락자는 제반서류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음.
- (6) 협상이 결렬된 협상대상자는 제안비용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의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제안비용 보상금을 지급함.
- (7) 주무관청이 협상 중 주무관청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9조의2에 따라 보상함.

제27조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1) 사업제안 개요

- ① 사 업 명: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② 사업위치: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일원(환경에너지센터 내)
- ③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8개월 포함)
- ④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⑤ 사업규모

구 분	시 설 규 모
건설 및 운영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 180톤/일(300일/년) -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90톤/일(300일/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90톤/일(300일/년) - 폐수처리시설: 1식(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기준)

- ⑥ 최초제안자: (가칭) 목포바이오에너지센터주식회사

(2) 사업의 추진방식

- 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3) 최초제안자의 정부지원 요구사항

① 처리대상 폐기물 공급 관련

가. 주무관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과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탈수케익은 본 사업자가 제안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우선 반입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② 발생 부산물의 무상처리 관련

가. 본 사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및 헝잡물은 주무관청 관내에 위생매립장에 무상매립 또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무상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수 후 기존 슬러지처리시설(건조시설)에서 무상 처리 협조 요청

다. 본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후 배출되는 폐수는 기존 펌프장에 인입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및 무상으로 처리 요청

③ 시운전 기간 동안 처리대상 폐기물 공급 및 헝잡물 처리 관련

가. 본 사업시설 시운전 기간 동안 원활한 신뢰성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대상 폐기물을 무상 공급 요청

- 나. 시운전 과정에서 폐수처리시설 미생물 활성을 위해 목포시 관내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미생물)를 무상(운반비 제외)으로 공급 요청
- 다.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소화슬러지의 처리는 운영 시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무상 처리 협조 요청

④ 소각, 매립세 관련

- 가. 향후 매립세와 소각세 등의 발생시 주무관청 부담 요청

⑤ 용량 및 수요관련 사전협의

- 가. 주무관청의 정책변경 등으로 반입용량이 변동되지 않도록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⑥ 사업부지 제공 및 사업추진에 관한 협조 관련

- 가.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차질 없이 제공할 것을 요청

- 나. 상수 및 오폐수, 도시가스, 전력 등 유틸리티 설비의 기존 시설과의 연계구축을 위하여 기존 환경에너지센터 내 도로 굴착 및 이설공사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단전, 단수, 차량통행 변경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본 제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원 요청

- 다. 시공 전 가설사무소 및 공사 중 자재 야적장 등 공사에 필요한 부지는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며 필요 부지에 대한 관련 업무 협조 요청

- 라. 사업부지 내 초기우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중복설치를 줄이기 위해 자원 회수시설이 계획하고 있는 초기우수처리시설을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마.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 운영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해결과 관련 인허가 업무에 협조 요청

⑦ 공사 중 침출수 처리 관련

- 가.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립장 침출수는 기존 펌프장으로 인입하여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직접 연계처리 될 수 있도록 요청

⑧ 행정지원 관련

- 가. 각종 인허가 및 행정사항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이에 대한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은 건설공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요청

⑨ 기존시설 공동사용 관련

가. 기존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계량시설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

⑩ 음식물류폐기물 통합관리방안(제안사항) 관련

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통합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⑪ 재정지원금 관련

가. 본 사업제안자는 적정 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의 53.9%인 37,898백만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지원금 29,740백만원 및 시지원금 8,158백만원을 자기자본 완납후 잔여 공사비 공정률에 따라 투입될 수 있도록 요청

⑫ 기부채납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가. 본 사업의 기부채납 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 일몰기한 이후 도래할 것으로 예정됨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향후 일몰규정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 요청

⑬ 인허가 관련

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제안자가 수행하는 제반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목포시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 업무 지원 요청

(4) 최초제안자에 대한 변경 및 제3자에 대한 요구사항

- ① 총사업비를 추정 총사업비(70,133백만원, 2021년 01월 01일 불변가격기준, 보상비 제외) 이하로 변경 및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시 실격처리함.
- ②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8개월 포함)
- ③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④ 사업규모

구 분	시 설 규 모
건설 및 운영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 180톤/일(300일/년) ·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90톤/일(300일/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90톤/일(300일/년) - 폐수처리시설: 1식(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기준)

가. 폐기물반입량, 공사기간 등은 사업제안자가 검토하여 자율제시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나. 본 사업시설 반입대상 폐기물은 목포시 하수처리장, 음식물류폐기물과 신안군의 음식물류폐기물로 구성됨.

- ⑤ 건설보조금의 산정은 건설보조대상 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중 설계경제성검토비, 건설사업관리비, 환경영향평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및 공사보험료 등)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율 및 지원금액(상한액)은 다음과 같음.

구분	지원율	지원금액(상한액)	비고
건설보조금	53.91%	37,809백만원	

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등에 따라 총사업비 중 보상비, 영업준비금, 운영설비비, 매입세액불공제액 등은 건설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음.

나. 건설보조금 지원율은 추정 총사업비에 대한 건설보조금의 비율임.

다. 건설보조금 및 지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함.

라. 다만, 건설보조금 산정 시, 설치비용단가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환경부, 2024)]을 참조하여 산정하되, 위 재정지원 비율에서 산정된 금액은 설치비용 표준단가에 의해 각 시설별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⑥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제안 제출일시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최초제안서대비 변경제안서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⑦ 최초제안자가 요청한 ‘(3) 최초제안자의 정부지원 요구사항’ 에도 불구하고, 본 공고에서 주무관청의 지원사항으로 명시한 사항 이외의 요구사항에 대해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동 비용을 모두 반영해야 하며,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업제안자가 부담함.

- ⑧ 본 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50%)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취득세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총 사업비에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할 예정임.

- ⑨ 사업부지는 주무관청에서 매입 등을 통해 무상제공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료 발생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⑩ 사업제안자는 제시한 성능보증 및 배출기준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에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함.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납입방법 등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서 정함.
- ⑪ 사업제안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포함한 유기성폐자원에 대한 성상조사 등 기초자료조사 분석 등의 미흡으로 발생한 추가시설 설치 필요시 그 책임은 사업제안자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⑫ 사업제안자는 본 시설로 반입되는 하수찌꺼기 성상 및 함수율, 음식물 등의 분석을 통해 연계 처리시설 및 본 사업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가. 반입대상 폐기물은 목포시의 하수찌꺼기, 음식물류폐기물 및 신안군의 음식물류폐기물로 구성되며 세부 반입 대상과 물량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함.

나. 본 사업시설에서 시운전 및 운영기간중 발생하는 이물질 및 협잡물은 목포시 위생매립장에 반입할 계획이므로 처리비는 제외하되 운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다만, 향후 주무관청의 소각시설 운영에 따라 소각 처리로 변동될 수 있으며 반입 조건, 비용 등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다. 본 사업시설에서 시운전 및 운영기간중 발생하는 폐수는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처리할 계획이므로 처리비는 제외하고, 폐수연계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연계관로 및 부대시설 일체)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공정폐수 등 연계처리수(매립장 침출수 200m³/일 포함)는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 처리되도록 연계처리 기준 이내로 제안하여야 하며 연계처리를 위한 기준 등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기준

구분	BOD	TOC	SS	T-N	T-P	비고
부하량 (kg/일)	175.0 이하	200.0 이하	27.0 이하	117.0 이하	13.2 이하	연계유량 430.4 m ³ /일 기준

주1) 폐수처리시설 미적용시 평가에서 제외함

- 주2) 처리비는 제외하되 폐수연계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연계관로 및 부대시설 일체)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 라. 본 사업시설 시운전 및 운영기간중 발생하는 소화탈수찌꺼기는 목포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계획(함수율 80% 이내)으로 처리비용은 제외하되 운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마.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립장 침출수는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 처리될 수 있도록 본사업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바. 본 사업시설의 공정폐수 등에 대한 연계처리 계획은 향후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통합처리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⑬ 주무관청은 단순히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실제 폐기물의 수거량과 예측량이 다를 경우 수요위험(수거량의 변동 등)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⑭ 사업 대상 부지 내 기존 시설물(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철거비는 본 사업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사업부지는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위치하여 인근에 하수슬러지건조시설 등 처리시설이 집약화되어 있으므로 금회 철거(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대상 부지 내 이송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설해야 한다면 본 사업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가설사무소 부지 및 자재 야적장 부지는 환경에너지센터 내 가용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⑮ 초기우수처리시설은 기존 설치된 시설을 활용하되 시설 공사중 불가피하게 시설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목포시와 협의하여 본 사업에 반영해야 함.
- ⑯ 「자원순환기본법」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주무관청이 부담하도록 함.
- ⑰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인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따른 시설의 성능 강화 등에 관한 공사비 및 운영비 증감 반영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운영비용의 투입 스케줄은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경상수선 및 대수선 등)에 부합하도록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최종 확정됨.
- ⑲ 「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기술지침서(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6)」의

2.1.2 공정별 설계.운전 가이드 라인 / ‘주요 공정별 설계 고려사항(운전 인자 포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통합인·허가비용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
- ㉕ 사업제안자에게 성능보증과 환경오염물질 보증(악취방지 보증, 대기오염물질 배출 보증,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성능 보증, 수질오염에 대한 성능 보증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이 있음.
- ㉖ 배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함.

(5)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

- ①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로 함.

(6) 기타사항

- ① 정부지원 요구사항은 인·허가 등 행정지원분야로 한정하고 비용을 수반하는 요구사항은 총사업비(운영비 포함)에 모두 반영하여야 함.

제 II 부 사업제안서 작성

제 6 장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

제28조 사업제안서 작성의 일반 지침

1. 사업제안서 작성의 제반 사항

- (1)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본 공고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2) 사업제안서는 [부록 1]의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된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보고서나 부속서류에 새로운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 ①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제안자는 이를 부속서류에 포함시켜야 함.
 - ②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함. 단 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해당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③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조건부) 협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창의적인 사항이 포함되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4) 사업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프로그램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수치자료 분석은 엑셀 등 스프레드 쉬트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는 USB로 제출하여야 함.
- (5) 관련 재무자료는 회계법인 등 해당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 (6) 사업제안자는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평가 완료 전에 반환하지 않음.
 - ① 주무관청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사업제안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록 1]의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② 사업제안서는 평가목적을 위하여 평가단에게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사업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2.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1) 일반사항

- ① 제출 서류는 무선철 좌철 형태로 제작함.
- ②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 용지 양면에 12point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 ③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함.
- ④ 재무분석 보고서 및 설계도면은 A3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 ⑤ 제한쪽수, 컬러면수, 지질 등을 위반할 경우 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총 6점 이내의 감점을 부여함.

(2) 사업제안서의 쪽수 규정: 사업제안서의 구성 및 제출부수 참조

- ① 표지(도서의 앞뒤 각1장)를 제외한 사업제안서에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로 쪽수를 표기하며, 복사물일 경우 수기(手記)로 표기 가능
- ② 쪽수 산정시 표지(도서의 앞뒤 각 1장)만을 제외하며, 목차, 간지 등은 포함함.
- ③ A3이상(A3, A2, A1, A0 포함)은 4쪽으로 산정함.

(3) 컬러면수 규정

- ① 컬러면수는 총 10면을 초과할 수 없으며(표지 컬러면수 사용 금지), 사업제안서를 구성하는 전체서류로 함.
- ② 일부분이라도 컬러를 사용한 경우에는 컬러면 사용으로 간주함. 단 간지를 색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함.
- ③ 컬러면수의 산정은 A4(뒷면 공백시)인 경우 1면으로 산정하며, A3이상(A3, A2, A1, A0 포함, 뒷면 공백시)인 경우 2면으로 산정함.

(4) 지질 규정

- ① 백상지(100g/m² 이내). 단, 표지, 간지, 컬러면에 대한 지질제한은 없음.
- ② 사업제안서 제출시 지질에 대한 확인서 제출.

3. 언어, 화폐단위 및 SI 단위

- (1) 사업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또한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요약 번역본을 첨부함.
- (2) 화폐단위는 원화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환율은 가격산출 기준일의 금융결제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 (3) SI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SI 단위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SI 단위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4. 사업제안서의 목차

- (1) 사업제안서는 [부록 1]의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려서 작성할 수 있으며 부속서류는 본보고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함.

제29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 (1) 사업제안자는 [부록 1]의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① 사업제안서 중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 시 사용된 전체 내용과 수치자료는 USB로 제출하여야 함.
- (2) 가격산출기준 및 물가변동률은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름.
- (3) 가격산출기준: 가격산출은 (2021년 1월 1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함. 다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 (4) 원화이자율: 본 공고일 기준 3년 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 및 국고채 5년 금리 등을 참고하여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고 그 산출근거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 (5) 외화를 차입할 때의 이자율 및 수수료: 외화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환위험 회피비용(Hedging Cost) 및 모든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All-in Cost)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6) 물가변동률: 연 2.00%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7) 실질수익률: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제시된 세전 및 세후 실질 수익률의 산출근거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 (8)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9) 적용환율: 불변가격 시점(2021년 1월 1일) 현재의 금융결제원 기준 환율을 적용하되 주무관청의 검토를 거쳐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10) 지표금리: 5년 만기 국채수익률 평균값
- (11) 사업비의 금액단위는 백만원으로 함.
- (12)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취득세 감면: 사업제안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을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50%가 경감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실시협약 체결 후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취득세가 변동되는 경우 총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13) 사업제안서류에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할 서류로서 본 공고의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보고서나 부속서류에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단, 변경된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14)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명시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30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1. 총사업비의 산정

- (1) 총사업비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통합한 것으로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각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항 목	내 용
조 사 비	·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항 목	내 용
설 계 비	·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른다.)
공 사 비	·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보 상 비 (필요시)	·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
부 대 비	·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건설사업관리비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비용
운영설비비	·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각종 세금과 공과금	·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	·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2. 총민간사업비의 산정

- (1)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총민간투자비는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2)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잔여 공사비 공정률 비율로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실제 보조금 지급일정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 (1) 총사업비는 협상단계에서 당초 사업제안서의 제시 금액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설계기준 및 관련법령·제도 등의 변경 또는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함.

-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실시협약으로 정하여진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되지 않음.
 - 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상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② 공정한 비교 평가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비(위험담보 손해배상보험 가입 비용 포함)는 3,300백만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 비용은 195백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비는 80백만원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3) 사업제안자 간 공정한 비교 평가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취득세 감면 50%를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함. 실시협약 체결 후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취득세가 변동되는 경우 총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4. 운영수입(ΣOR_i)의 산정

- (1) 운영수입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후 운영기간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의 사용료수입액 등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예상수입액으로 산정함. 사업제안자는 자기 책임으로 연차별 수요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료·운영수입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5. 운영비용(ΣOC_i)의 산정

- (1) 운영비용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법인세 제외)
- (2)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항목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인건비와 일반경비를 제시하여야 함.
- (3) 운영기간 중 재원조달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창업비·개업비·영업권 등의 상각비 포함)는 시설사용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으로서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 (4)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 운영비용은 전력비, 약품비, 연료비, 상수도비 등을 말하며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하고, 이를 제외한 운영비는 고정운영비로 함.
- (5)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추가출자 등의 방법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하여야 함.
- (6) 본 사업 준공 후 운영 시 소요되는 전력비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7) 연도별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함.
- (8) 경상운영비는 전년도 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6. 수요 추정 시 개발계획 반영 등

- (1) 사업제안자는 수요량 추정 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관련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요 추정 결과가 제시되도록 하여야 함.
 - ① 택지 또는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
 - ②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이 이루어진 사업
 - ③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SOC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다만, 사업추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은 제외
 - ④ ①~③ 이외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 착수 및 완료된 사업
- (2) 사업제안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 관련 계획을 반영한 경우, 별도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수요를 제시해야 함.
- (3) 원칙적으로 수요 추정에 따른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으며, 사업제안자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7. 보상비의 산정방법

- (1) 기존 부지 내에 금회 사업시설을 설치하므로 보상비는 없는 것으로 산정함.

제31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1) 사업제안서는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가격부문 제외), 제3권 가격부문 본보고서(기술부문 제외), 제4권 부속서류(부속서류 I, II)로 구분하여 나누어 제출하고, 제3권 가격부문 본보고서(기술부문 제외)와 제4권 부속서류 중 부속서류 I(가격부문 증빙서류), 부속서류 II(공사비 내역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운영비 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제안서의 제출부수는 아래와 같음.

제안서류			규격	허용 쪽수	제출 부수		비고
					원본	사본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A4	-	1부	7부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A4	-	<양식1, 2>			
	- 서약서	A4	-	<양식3, 4> 인감신고서 포함			
	- 기타 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A4	-	<양식5>~<양식16>			
	- 감사, 결산보고서(5년)	A4	적정쪽수	1부	1부	-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가격부문 제외)			A4	300쪽	1부	20부	<양식17~18, 20, 22>
제3권 가격부문 본보고서(기술부문 제외)			A4	100쪽	1부	5부	<양식19, 21, 23~31> 밀봉하여 첨부
	- 공사비 내역서 요약	A4					
	- 운영비 내역서 요약	A4					
	- 재무모델(USB)	엑셀			1set	2set	엑셀로 작성
제4권 부속서류			-		-	-	-
부속서류 I	기술부문 증빙서류	A4	적정쪽수	1부	5부	-	
	가격부문 증빙서류	A4	적정쪽수	1부	2부	밀봉하여 첨부	
부속서류 II	기본설계보고서	A4	300쪽	1부	15부	-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A4	적정쪽수	1부	5부	-	
	기본설계 도면	A3	적정쪽수	1부	4부	-	
	공사비 내역서	A4	적정쪽수	1부	2부	밀봉하여 첨부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A4	적정쪽수	1부	2부	밀봉하여 첨부	
	운영비 내역서	A3	적정쪽수	1부	2부	밀봉하여 첨부	
	구조계산서	A4	적정쪽수	1부	2부	-	
	수량 산출서	A4	적정쪽수	1부	2부	추후제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USB)			엑셀 및 한글		1set	2set	-

주) 가.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1단계 평가 시 사용하는 자료임.

나. 제2권, 제3권 보고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양식에 준하여 작성함.

- 다. 제4권 부속서류 I: 본 보고서(기술부문, 가격부문)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본 보고서의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함.
- 라. 제4권 부속서류 II: 본 보고서와 부속서류 I 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임.
- 마. 추후 제출서류는 주무관청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제출함.
- 바. 사업제안서 원본에 “각종증명서,확인서,등본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증빙서류”(이하 “등본” 이라함)를 첨부할 경우
- 동 등본에 대해서는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지질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지질에 대해서는 사본을 기준으로 함.
- (2) 사업제안서 중 본보고서, 부속서류, 사전적격심사 서류의 원본은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예: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가칭)OO주식회사]을 기재하고, 대표출자자(사업제안자가 법인일 경우는 동법인의 대표자, 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회사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3) 사업제안서는 원칙적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보고서나 부속서류에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 ① 사업제안서 평가 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사업제안자는 부속서류에 이를 포함하여야 함.
- (4)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명시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 7 장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작성

제32조 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

- (1) 1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공고의 1단계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2) 사업제안자는 1단계 평가인 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함.
- 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양식 1>)
- ② 법인설립계획
- (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양식 2>, <양식2-1> 또는 제안자 현황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양식 2-2>)

- ③ 서약서(<양식 3>)
 - ④ 인감신고서(<양식 4>)
 - ⑤ 출자자구성(<양식 5>)
 - ⑥ 출자자현황(<양식 6>)
 - ⑦ 출자자연혁(<양식 7>)
 - ⑧ 출자자의 주주현황(<양식 8>)
 - ⑨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양식 9>)
 - ⑩ 출자자의 재무상태표(<양식 10>)
 - ⑪ 시공(설계, 운영) 참여확약서(<양식 11>)
 - ⑫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양식 12>)
 - ⑬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양식 13>)
 - ⑭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양식 14>)
 - ⑮ 정상가동 실적 증명서(<양식 15>)
 - ⑯ 재무능력 평가표(<양식 16>)
 - ⑰ 타인자본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
 - ⑱ 사업제안자 직접투자분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 ⑲ 시공(설계, 운영)실적 증명서류
 - ⑳ 사업 및 시공능력 확인을 위한 업면허 증명서류
 - ㉑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서류
 - ㉒ 신용평가서 등
- (3) 사업제안자는 상기 제출서류 외에 1단계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제33조 기본사항

- (1) <양식 1>, <양식 3>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이 날인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2) <양식 4>의 인감신고서를 작성하여 <양식 3> 다음에 첨부함.
- (3) 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양식 2>을 작성하고, <양식2-1>을 작성하여 <양식2> 다음에 첨부함.
- (4)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양식2-2>을 작성함.

제34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 (1) 사업제안자의 출자자 구성 및 출자자 현황을 <양식 5> 및 <양식 6>에 따라 작성하되, 관계 증명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 역할별 각각의 출자분 표현 내용 추가(양식 참조)
- (2) 운영사, 재무적 투자자인 경우 <양식 5>의 구성원의 역할란에 별도 표기함.
- (3) 출자자의 연혁은 <양식 7>에 따라 작성함.
 - ① 출자자의 연혁은 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 서류로 첨부함.
- (4) 출자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은 <양식 8>에 따라 작성하되, 출자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출자자가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며, 소유자, 소유주식수, 금액, 지분을 등이 표시된 입수 가능한 최근의 주주 명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기준일자를 명시함.
- (5) 출자자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함.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① 손익계산서: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손익계산서를 <양식 9>에 따라 작성함.
 - ② 재무상태표: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재무상태표를 <양식 10>에 따라 작성함.
- (6) (5)에 따른 양식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함.

제35조 사업수행능력

- (1) 설계능력(D)
 - ① 설계능력 평가를 위한 서류는 <양식 11>, <양식 12>에 따라 작성.
 - ② 설계능력에 대하여는 발주처로부터 설계실적 및 참여 컨소시엄 지분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2) 시공능력(B)
 - ①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서류는 <양식 11>, <양식 12>에 따라 작성.
 - ② 시공능력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

(3) 운영능력(O)

- ① 운영능력 평가를 위한 서류는 <양식 11>, <양식 12>에 따라 작성.
- ② 운영능력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재무능력(F)

- ① 출자자의 투자분(추가출자 및 후순위주주차입금 포함)에 대해서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의 조건부 투자확약서(추가출자 및 후순위차입금 포함)를 추가로 제출하되,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 ②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 확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③ 재무능력 평가표는 <양식 16>에 따라 작성하고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양식 16-1>에 따라 작성함.
- ④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간(또는 실적 있는 기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⑤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

제 8 장 2단계 평가서류 작성

제36조 기술 부문 평가서류 작성

- 1. 2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 (1) 기술부문 본보고서는 기술 및 가격 분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기술부문 본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함.

2. 제 I 장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개요

- (1)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 타당성 및 사업개요를 제시하여야 함.

3. 제Ⅱ장 건설계획

(1) 제1절 기술계획

① 각종 상위계획도서의 검토사항 및 현장여건의 검토사항을 기술함.

② 공법 및 설계의 적정성

가. 기술요소(공법 및 시공계획) 관련계획을 기술함.

나. 설계안을 제시하고, 도면 및 기타 자료는 부속서류에 첨부함.

다. 사전조사, 공법설정, 설계기준의 설정,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라. 계획단면의 구조적 안전성, 설계기준 및 제시방의 부합성, 적용하중 및 강도 설정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마.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기존자료 분석 및 설계에의 적용 등 지반분야 설계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③ 환경친화적 계획

가.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환경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2) 제2절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구성계획

가. 시공자 선정 및 공사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② 시공관리계획

가. 분야별 세부 시공계획 및 사전 검토사항, 자원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③ 공정계획

가.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표시된 전구간의 예정공정표(예정공정관리도)를 제출함.

④ 견실시공

가. 공사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적정 보험가입 등 견실시공 보장방안을 기술함.

⑤ 건설 중의 환경관리.교통처리.민원대처 계획

가. 건설공사 시행 중의 환경관리 및 교통처리대책과 민원대처계획을 기술함.

⑥ 행정지원 요구사항

가. 사업제안자는 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정부(지자체 포함)의 재정투입을 요하지 않는 지원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함.

4. 제Ⅲ장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 제1절 사업관리계획

- ① 시설안전관리계획은 시설의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긴급 재난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함.
- ② 환경친화적 운영계획은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대기 및 악취 처리계획, 소음 및 진동처리계획을 제출함.
- ③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은 시설에 대한 효율적·창의적 운영방안을 기술하며, 시설물별 운영방법, 처리 및 방류수질 보증치 관리계획, 원가절감계획, 물품 장비투입계획 등을 수립함.

(2) 제2절 시설유지보수계획

- ① 시설유지보수계획은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
가.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계획
나. 본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계획
다. 유지보수를 위한 자기진단계측 system 구축계획
- ② 본 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양식 17>에 따라 작성함.
- ③ 유지보수비 비용 산정의 적정성은 유지보수비 산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함.

(3) 제3절 사업관리계획

- ① 사업관리조직
가.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건설기간 중 및 시설준공 후로 구분하여 <양식 17>에 따라 작성함.
- 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양식 17>에 따라 작성함.
- ③ 경영진 채용기준
가.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채용기준을 기술함.
나. 경영진의 경력요건 등 채용기준을 <양식 20>에 따라 작성함.

5. 제Ⅳ장 수요추정방법 및 과정의 적정성

- (1) 수요예측을 위한 기본가정, 상위계획의 반영방법 등 수요추정 과정 및 전망에 대하여 기술함.
- (2) 상위계획 및 지역 현황에 따른 연도별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여 연도별 수요량을 <양식 22>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함.
- (3) 연도별 수요량은 사업제안자가 추정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처리량 추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제37조 가격 부문 평가서류 작성

1. 2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1) 가격부문 본보고서는 기술 및 가격 분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가격부문 본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함.

2. 제 I 장 총민간투자비 및 운영비의 산정

(1) 총사업비, 총민간사업비,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등을 제시

① 제시된 총사업비 상한선을 참고하여 총사업비의 산정을 <양식 23>에 따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부속서류에 포함함.

② <양식 23>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③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을 <양식 24>에 따라 작성함.

(2) 운영비 제시

① 연도별 운영비 예산 투입계획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양식 21>에 따라 작성함.

3. 제 II 장 자본투입계획

(1)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출자자별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시

① 자기자본투입계획을 <양식 25>에 따라 작성함.

(2)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타인자본 조달계획, 대출확약서(의향서) 등을 제시

① 제안자의 연도별 자금차입계획을 <양식 26>에 따라 작성함.

4. 제 III 장 예비재원 조달계획

(1) 예비재원 조달계획, 추가출자 확약서 등을 제시

5. 제 IV 장 현금흐름 분석 및 추정 재무제표

(1) 재정지원금 규모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을 <양식 27>에 따라 작성함.

① <양식 27>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2) 추정재무제표

① 추정재무제표는 사업의 전 기간(건설기간 포함)에 걸쳐 작성함.

② 추정손익계산서를 <양식 28>에 따라 작성하되, 가정한 기준을 제시함.

가. 환율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금융결제원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나.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내에 관리운영권의 정액상각으로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

다. 운영설비비는 본 공고일 현재 세법에 따라 적용하는 내용년수를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운영기간 종료 후 잔존가치는 “0(Zero)” 가정).

라.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은 본 공고일 현재 세법을 기준함.

마. 차입금리는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함.

④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하되,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⑤ 추정재무상태표를 <양식 29>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⑥ 추정현금흐름표를 <양식 30>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가. 직접법으로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함.

⑦ <양식 28>, <양식 29>, <양식 30>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6. 제 V 장 사업수익률

(1) 수익률

① 사업제안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요구수익률 및 그 산정근거를 작성함.

② 세후수익률도 함께 제시함.

7. 제 VI 장 정부지원 요구사항

(1) 건설보조금 등 기타 정부 및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술하되 정부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사유 등을 상세히 제시함.

(2) 건설보조금 요구액 및 시기를 <양식 32>에 따라 작성함.

제38조 설계도서

(1) 사업제안서의 설계도서는 사업제안서 평가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양식은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제39조 부속서류

(1) 사업제안서의 부속서류는 사업제안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관련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함.

제 III 부 사업제안서의 평가 등

제 9 장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40조 사업제안서 평가의 전제조건

- (1)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전에 제안공법 및 공정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2)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 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평가단이 사업제안서를 검토·평가한 결과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함.
- (3)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서 주무관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함.
- (4) 사업제안자가 ‘평가항목 및 배점’ 표에서 제시한 특정 세부배점기준(예, ○ 시설계획 및 공법의 적정성 중 “ -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의 적정성” 부분을 말함)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고 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세부평가항목을 “0” 점으로 처리함. 사업제안자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관련계획이 불필요하여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이나 세부배점기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음.
- (5) 본 공고문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6)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7) 추정 총사업비 70,133백만원(2021.1.1. 기준 불변가격)을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 (8)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9) 사업제안서 평가 후 출자자 및 출자자 지분의 변경은 불가능하나,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참여가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함.
- (10) 실시협약 체결 이후의 출자자 및 출자자 지분의 변경은 실시협약에 따름.

제41조 사업제안서 평가방법

- (1) 사업제안서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분리평가(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를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① 1단계 평가는 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 접수일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함.
 - ※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2) 1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①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설계능력(D), 시공능력(B), 운영능력(O), 재무능력(F)의 자격 등을 평가하며, 해당 평가항목 모두 기준 이상이면 ‘통과(Pass)’ 이고, 한 가지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Fail)’ 임.
 - ②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자를 적격자라 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3) 2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①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요소를 평가하며, 분리평가를 실시함.
 - ②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하며, 평가항목별 최종 득점은 각각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함.
 - ③ 2단계 평가결과 총 평가득점이 총 배점의 70%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4) 평가단은 1단계 및 2단계 평가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당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 후 평가할 수 있음.

제42조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

- (1) 1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설계(D), 시공(B), 운영(O), 재무(F) 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2) 1단계 평가결과는 ‘통과’ 또는 ‘탈락’ 만을 구분하며, 2단계 평가점수와 연계하지 않음.
 - ① 1단계 평가에 해당하는 모든 평가항목이 기준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한 가지 평가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Fail)됨.
 - ② 1단계 평가를 통과하여 적격자로 개별 통보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3) 각종 증명서는 본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4) 다음표의 평가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사업제안 자격을 부여함.

구 분	기 준
출자자 및 참여자 평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서약서, 법인설립계획서, 인감신고서, 출자자 구성, 출자자 현황, 출자자 연혁, 출자자 주주현황, 출자자 손익계산서, 출자자 재무상태표, 시공(설계, 운영) 참여확약서,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 재무능력 평가표, 투자확약서 등
설계능력(D)	○ 설계능력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따라 건설부문(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기계부문(산업기계설비), 환경부문(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라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 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일반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기계분야, 전기분야) 또는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기관에 따라 발주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실적 1건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복수의 설계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구 분		기 준
		※ 출자자가 설계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회사가 해당 사업의 설계에 참여한다는 설계 참여 확인서를 제출
시공능력(B)		○ 시공능력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본 사업시설공사 시공에 적합한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기관에 따라 발주된 유기성폐자원(단일성상인 경우도 인정) 바이오가스화시설 30톤/일(단일시설) 이상의 시공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2개사 이상 공동도급으로 시공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하 “시공주간사”)가 상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해외실적 증명서는 주무관청이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자명, 연락처, 회사명 등을 제출하여야 함(실적 증명서 외에 별도 표기 가능). ※ 출자자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공회사가 해당 사업의 시공에 참여한다는 시공 참여 확인서를 제출
운영능력(O)		○ 운영능력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유기성폐자원(단일 성상인 경우도 인정) 바이오가스화시설 30톤/일(단일시설) 이상의 1년 이상 운영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1년 이상 운영(시운전 기간 제외)한 업체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양식15>)를 제출하여야 함 ※ 복수의 운영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 출자자가 운영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운영회사가 해당 사업의 운영에 참여한다는 운영 참여 확인서를 제출
재무능력(F)	자기 자본 조달 능력	○ 다음의 경우 중 1개를 선택하여 평가함 ㉠ 출자자별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활용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회사채 B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A3- 이상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채 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B0 이상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의 감사보고서 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 예정금액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함 -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 ○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다른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 ○ 상기 ㉠ 또는 ㉡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7호 부실징후기업은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소위 인프라펀드) 포함), 연금금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능력에 대한 참가자격사전심사는 생략함

구 분		기 준
		수 있음 ○ 재무적투자자 중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설립예정인 집합투자기구는 자신이 본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120% 이상을 투자확약하는 내용의 투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투자 예정기관으로부터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예정자들의 재무능력의 평가는 상기 기준을 따름. -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는 기약정 미인출 잔액이 자신의 본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120% 이상이어야 함(이 경우 금융감독원 등록확인서와 출자여력을 확인(증명)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무능력 평가는 본 공고의 추정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상한액, 37,809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민간투자비로 가정하여 산정
	타인 자본 조달 능력	○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첨부
	재무 능력 평가	○ 본 공고의 추정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상한액, 37,809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민간 투자비로 가정하여 산정함.

제43조 제출서류 심사

- (1) 제출서류 목록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누락 항목이 있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함. 실격처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단의 판단(2/3 이상 의결)에 따름.
- (2) 사업제안자는 다음 ① ~ ②의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양식 1>)
 - ② 법인설립계획(<양식 2>)
 - ③ 서약서(<양식 3>)

가. 사업제안자는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이 날인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④ 인감신고서(<양식 4>)

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을 제출하여야 함.
 - ⑤ 출자자 구성(<양식 5>)

가. 사업제안자는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 제안서에 의한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로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함.

나. 자기자본금은 타인자본 및 건설보조금보다 선행하여 투입을 완료하여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조건부)대출확약서와 나

- 머지 차입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라. 직접투자분에 대한 출자자가 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 마.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 제출한 금융기관 등의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 바. 모든 출자자의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에 포함시켜야 함.
- 아.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함.
- 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 차.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능한 한 조속히 「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함.
- 카. 사업제안자 또는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자는 복수의 컨소시엄 혹은 사업제안법인에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음.

⑥ 출자자현황(<양식 6>)

- 가.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사업제안자가 기존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함.

⑦ 출자자연혁(<양식 7>)

⑧ 출자자의 주주현황(<양식 8>)

⑨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양식 9>)

⑩ 출자자의 재무상태표(<양식 10>)

⑪ 시공(설계, 운영) 참여확약서(<양식 11>)

⑫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양식 12>)

⑬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양식 13>)

- ⑭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양식 14>)
- ⑮ 정상가동 실적 증명서(<양식 15>)
- ⑯ 재무능력 평가표(<양식 16>)
- ⑰ 타인자본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
- ⑱ 사업제안자 직접투자분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 ⑲ 시공(설계, 운영) 실적 증명서류
- ⑳ 사업 및 시공능력 확인을 위한 업.면허 증명서류
- ㉑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서류
- ㉒ 신용평가서 등

제44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주무관청이 참가자격사전심사(PQ) 평가대상으로 결정한 모든 항목 및 내용이 통과되어야 2단계 평가의 대상이 됨.

1. 설계능력(D)

(1) 설계능력은 다음 ① ~ ⑥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따라 건설부문(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기계부문(산업 기계설비), 환경부문(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②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라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거나 전력기술 관리법령에 따라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일반측량업(또는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기계분야,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⑥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

하는 발주기관에 따라 발주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계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복수의 설계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 (2) 출자자가 설계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회사가 해당 사업의 설계에 참여한다는 설계 참여확약서(<양식 11>)를 제출하여야 함.
- (3) 참가자격사전심사 후 설계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제안자(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시공능력(B)

(1) 시공능력은 다음 ① ~ 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사업시설공사 시공에 적합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자
- ②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기관에 따라 발주된 유기성폐자원(단일성상인 경우도 인정) 바이오가스화시설 30톤/일(단일시설)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③ 2개사 이상 공동도급으로 시공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하 “시공주간사”)가 상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2) 해외실적 증명서는 주무관청이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자명, 연락처, 회사명 등을 제출하여야 함(실적 증명서 외에 별도 표기 가능).
- (3) 출자자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회사가 해당 사업의 시공에 참여한다는 시공 참여확약서(<양식 11>)를 제출하여야 함.
- (4) 참가자격사전심사 후 시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제안자(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운영능력(O)

(1) 운영능력은 다음 ① ~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유기성폐자원(단일성상인 경우도 인정) 바이오가스화시설 30톤/일(단일시설) 이상의 1년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② 1년 이상 운영(시운전 기간 제외)한 업체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양식

15>>를 제출하여야 함

※ 복수의 운영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 (2) 출자자가 운영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운영회사가 해당 사업의 시공에 참여한다는 운영참여확약서(<양식 11>)를 제출하여야 함.
- (3) 참가자격사전심사 후 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제안자(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재무능력(F)

- (1) 재무적투자자를 제외한 모든 출자자는 ① 또는 ②의 경우에는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 및 같은 법 제335조의2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사가 이 공고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의 출자자의 경우 회사채는 BBB- 이상, 기업어음은 A3-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

나.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의 출자자의 경우 회사채는 BB- 이상, 기업어음은 B0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

다. 회사채 및 기업어음은 본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② 각 출자자의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연 평균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인 경우(<양식 16>)

※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함.

③ 다만, 개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다른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함.

가. 상기 ① 또는 ②를 만족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7호 부실징후기업은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자본금 투

입예정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출자보증 한 제3자의 경우에는 상기 ① 또는 ②의 제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출자자 기준을 충족한 후의 잔여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재무적투자자 중 기관투자자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3) 재무적투자자 중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는 자신이 본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120% 이상을 투자확약하는 내용의 투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투자 예정 기관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하며, 투자예정자들의 재무능력의 평가는 상기(1)(2)를 따름.

가. 설립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함.

나. 설립예정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본 사업에 투자할 기관투자자의 총액 인수를 담당할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또는 조건부 총액인수확약서를 제출함.

②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는 기약정 미인출 잔액이 자신이 본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120% 이상이어야 함(이 경우 금융감독원 등록확인서와 출자여력을 확인(증명)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투자회사는 법인 명의의 출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투자신탁은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출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단,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조건부 출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총액인수확약서(공모의 경우)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에 수탁회사 명의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제안자는 타인자본 조달능력에 대한 적격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5) 재무능력 평가는 본 공고의 추정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상한액, 37,809 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민간투자비로 가정하여 산정함.

제45조 2단계 평가 일반기준

- (1) 1단계 평가(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기술·가격 중심/기술 및 가격 분리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는 기술부문[건설계획(설계/시공),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수요], 가격부문[출자자의 구성, 가격평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 ① 기술부문 (550점)
 - 가. 건설계획(설계/시공) (320점)
 - 나.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80점)
 - 다. 수요 (50점)
 - ② 가격부문 (450점)
 - 가. 출자자의 구성 (50점)
 - 나. 가격평가 (400점)
- (2)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을 합산한 결과 고득점을 획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합산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가격부문, 기술부문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함.
- (3) 모든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산정함.
- (4) 가격부문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비율 등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함.
- (5) 정성적 평가(비계량 평가항목)는 (A0, A-), (B0, B-), (C0, C-), (D0, D-), (E0, E-)의 10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절대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등급별 일반적 평가기준은 다음의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표>를 기준으로 하며, 업체간 등급차등 적용함(동일등급 평가금지).
 - ① 평가의 일반적 기준은 세부평가항목별 요소에 대하여 사업제안자의 제안 수준별로 적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② 각 등급 간 배점 차이는 12.5%, 세분류 등급의 배점차이는 6.25%를 기준으로 함(최소점수는 배점의 43.75%).
 - ③ 평가는 보간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배점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 ④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평가항목을 “0” 점 처리할 수 있음.
- (6) 정량적 평가(계량평가)는 원칙적으로 비율 등에 의해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기준처럼 5등급을 반드시 유지하지는 않음.
- (7) 총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함.

〈표〉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급	평가기준	점수
A0	- 평가항목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탁월한 창의력이 있어 사업시행 시 그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경우	100%
A-	-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그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사업제안자와의 추가적인 협상 없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의 확보가 확실시되는 경우	93.75%
B0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87.5%
B-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주무관청과의 협상 또는 추가적인 계획 제시를 통하여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81.25%
C0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겨우 만족시킨 경우	75%
C-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이 겨우 만족하거나, 계획이 다소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68.75%
D0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한 경우	62.5%
D-	-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계획이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한 구체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6.25%
E0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평가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50%
E-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누락하여 협상 시 상당한 시일과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3.75%

제46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 (1) 2단계 평가의 평가 분야는 기술부문[건설계획(설계/시공), 사업관리 및 운영 계획, 수요], 가격부문[출자자 구성, 가격평가]으로 구분하며,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 (2) 각 평가분야별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 (3) 각 평가 항목별 평가배점은 아래 표에서 제시한 바에 따름. 기술부문 등 비계량항목의 평가방법은 제45조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따라 10개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별 배점함.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기 준	배 점
기술 부문	건설계획 (설계/시공) (320)	○ 시설계획 및 공법의 적정성 - 상위계획 검토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 폐기물 특성을 고려한 공정선정의 적정성 - 시설규모(용량) 산정의 적정성	70 (20) (20) (30)
		○ 기계설계의 적정성 - 기계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환경오염방지 및 실내오염방지를 위한 설비계획의 적정성 -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한 공정 및 설비계획 - 단위시설별 기계선정 및 처리공정계획의 적정성	80 (20) (10) (20) (30)
		○ 전기 및 계측제어 설계의 적정성 - 전기설비 구성계획의 적정성 - 조명 및 방재설비 계획의 적정성 - 계측제어 및 통신 설비계획 등의 적정성	30 (15) (10) (5)
		○ 토목설계의 적정성 - 각종 조사(현황조사,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등) 및 구조물 설계의 적정성 - 부지내 도로 및 포장계획의 적정성 - 우수배제, 오·폐수 처리 계획 등의 적정성	40 (20) (10) (10)
		○ 건축 및 조경설계의 적정성 - 건물배치 및 구조, 외관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 조경시설 등 조경 계획의 적정성	20 (15) (5)
		○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10
	시공계획의 적정성 (70)	○ 시공사 선정의 적정성 - 시공관리조직 구성계획의 적정성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20 (10) (10)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 수립 및 공기지연 방지 대책의 적정성 -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20 (10) (10)
		○ 건설시공 보장방안의 적정성 -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20 (10) (10)
		○ 환경 및 민원 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수질,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적정성 - 공사중 민원관리 및 대처계획의 적정성	10 (5) (5)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80)	○ 사업관리조직의 적정성 - SPC 관리 조직 및 계획의 적정성 - 운영관리회사 조직 및 계획의 적정성	30 (15) (15)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기 준	배 점
가 격 부 문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150)	○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 - 운영관리 조직의 적정성 - 효율적 시설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 운영기간 중 폐기물처리의 적정성 ·시설운영기간에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 처리방안 제시 - 성능보증(설계기준)의 적정성	80 (30) (20) (10) (20)
			○ 시설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계획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비상시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 기술이전 및 운영교육계획의 적정성	70 (30) (15) (15) (10)
	수요 (50)	수요의 적정성 (50)	○ 수요 추정방법의 적정성 - 기본가정, 기초 자료의 수집 등 조사의 적정성 - 상위계획의 검토 및 반영의 적정성	20 (10) (10)
			○ 추정수요 산정의 적정성	20
			○ 바이오가스 생산량 산정의 적정성	10
	출자자의 구성 (50)	출자자의 참여정도 (50)	○ 출자자의 출자비율 -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50 (20) (30)
	가격평가 (400)	건설보조금 요구수준 (100)	○ 건설보조금 요구수준	100
사용료 요구수준 (300)		○ 사용료 요구수준	300	
종합점수 (1,000)		○ 기술 및 가격 획득점수 합계		

주 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함.

2) 제안 건설보조금이 공고안에 명시된 지원금액(37,809백만원) 또는 지원율(53.91%)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함.

제47조 기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부문 평가는 건설계획(설계/시공),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수요의 평가분야를 말하며,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1.1 건설계획(설계/시공) 분야(320점)

(1) 설계의 적정성(250점)

① 시설계획 및 공법의 적정성 (70점)

가. 상위계획 검토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20점)

- 각종 상위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계획 검토사항 및 현장여건의 검토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함.

- 각종 지침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함.

나. 폐기물 특성을 고려한 공정선정의 적정성 (20점)

-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적인 공법 선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특히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처리공정(flow sheet) 선정의 근거와 그 내용의 합리성 및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 변동 시에도 적정처리 가능한 공정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함.
- 동일공법의 유사 실적 및 정상가동 여부, 시운전 및 성능보장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처리시설에서의 에너지 및 물질회수 효율성.타당성 등에 대하여 평가함.

다. 시설규모(용량) 산정의 적정성 (30점)

- 폐기물의 발생일 및 수거특성(원단위 포함)을 고려하여 처리용량을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평가함.
-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처리규모를 산정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된 시설의 처리용량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 타당성 및 적정성을 평가함.
- 돌발상황 발생시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함.

② 기계 및 공정분야 설계의 적정성 (80점)

가. 기계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20점)

- 처리공정에 부합한 각종설비 계획과 유지관리 편의성, 작업자 안정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배치.동선계획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함.

나. 환경오염방지 및 실내오염방지를 위한 설비계획의 적정성(10점)

- 주요 기기의 소음, 진동, 악취 방지를 위한 주요 설비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환경오염(악취, 먼지) 발생과 외부확산 방지를 위한 설비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악취처리설비의 처리방식, 처리용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대책과 발생 후 처리 공정의 적정성을 평가함.
- 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연계처리수 등 처리계획의 적정성 및 경제성, 협잡물, 비산먼지 방지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다.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한 공정 및 설비계획(20점)

- 폐기물 처리에 따른 설비의 내구성 저하(부식, 마모, 막힘 등) 방지 대책 및 가스 생산에 따른 부식 방지 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함.
- 유기성폐자원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 계획의 적정성 및 여유율, 안전율을 고려한 설비계획을 평가함.

라. 단위시설별 기기선정 및 처리공정계획의 적정성(30점)

- 유기성폐자원 전처리설비의 각 단위설비의 경우 불특정한 성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적용된 설비의 안정성 및 적정성을 평가함.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폐기물 투입설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유기성폐자원의 안정적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극대화를 위한 혐기성 소화 설비, 바이오가스 활용계획 적정을 평가함.

③ 전기 및 계측제어설계의 적정성(30점)

가. 전기설비 구성계획의 적정성(15점)

- 주변 현황조사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수전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함.
- 안정성을 고려한 전력계통의 기기선정 및 배치계획을 평가함.
- 비상시 단계별 전력공급계획을 평가함.
- 전력계통의 원격감시제어 및 효율적인 전력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평가함.

나. 조명 및 방재설비 계획의 적정성(10점)

- 조도기준 및 실별 특성을 고려한 조명기구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함.
- 유지관리 업무 효율성과 운영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전관방송설비 및 통신설비의 적정성을 평가함.
- 소방 관련법규에 준수한 설비구성 및 화재시를 대비한 소방설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다. 계측제어 및 통신설비계획 등의 적정성(5점)

- 운영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감시제어설비 선정 및 자동제어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④ 토목설계의 적정성(40점)

가. 각종 조사(현황조사,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등) 및 구조물 설계의 적정성(20점)

- 지반조사의 적정성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부지이용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평가함
- 지반의 강도특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지반 굴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지지층의 지반특성, 구조물의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한 기초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부지내 도로 및 포장계획의 적정성(10점)

- 현장부지 조성을 위한 정지 및 사토처리계획의 합리성, 부지 내 도로, 주차장 및 포장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부지 내 시설 설치에 따른 기존 동선계획의 변경시 그 합리성 및 구조물 피해 최소화 여부 등을 평가함.

다. 우수배제 및 오.폐수 처리계획 등의 적정성(10점)

- 기존시설 현황과악을 통한 우수배제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시설운영 중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⑤ 건축 및 조경설계의 적정성(20점)

가. 건물배치 및 구조, 외관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15점)

-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배치계획수립, 동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사업지역의 특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건축물 외관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구조해석, 부지계획, 지진하중을 포함한 제반 하중조건 등을 고려한 건축 구조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건축계획(녹색 건축의 인증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조경시설 등 조경계획의 적정성(5점)

- 주변 환경과 연계한 조경구상, 식재수종, 생태적 특성, 조경시설물 배치 등 조경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함.
- 유지관리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⑥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10점)

-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전력, 자원 등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소모량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설비 계획 등을 평가함.
- 시설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단위용량의 적정성을 평가함.
- 저공해 건설기계 적용의 적정성을 평가함.

(2) 시공계획의 적정성(70점)

① 시공사 선정의 적정성 (20점)

가. 시공관리조직 구성계획의 적정성(10점)

- 시공사 조직구성 및 공사수행조직도, 분야별 기능인력 투입계획 및 교육 계획, 공사관리 기본방침 및 공사관리조직의 분야별 및 기간별 투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10점)

- 인허가 계획 및 시공관련 법규검토의 적정성, 공종별 세부 시공계획, 장비 투입계획, 자재원 조달계획 등 시공전반에 걸친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②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20점)

가. 공정계획 수립 및 공기지연 방지대책의 적정성(10점)

- 효율적인 공정계획수립과 공기 지연에 대한 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10점)

- 적정 공기 산정 및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하여 휴일, 동절기 공사 수행 등을 고려한 예정공정표의 적정성을 평가함.

③ 건설시공 보장방안의 적정성(20점)

가.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10점)

-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 각 공종별 품질관리 계획과 체계적인 품질시험계획이 수립되었는지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점)

-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구성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시공 중 작업자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반영사항의 적정성을 평가함.

④ 환경 및 민원 관리계획의 적정성(10점)

가. 환경관리계획(수질,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적정성 (5점)

-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영향 및 피해에 대한 예측 및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공사중 민원관리 및 대처계획의 적정성 (5점)

-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등에 대한 민원 저감대책, 민원예방 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1.2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80점)

(1)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30점)

① SPC 관리 조직 및 계획의 적정성(15점)

- SPC 관리 조직 및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② 운영관리회사 조직 및 계획 적정성(15점)

- 운영관리회사 조직 및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2)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150점)

①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80점)

가. 운영관리 조직의 적정성(30점)

- 시설운영시, 시설운영 조직, 인력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효율적 시설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20점)

- 사업시설의 안정적 기능수행을 위한 단계별 운영관리계획, 중앙제어시스템 등 시설 규모에 적합한 유지관리체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다. 운영기간 중 폐기물처리의 적정성(10점)

- 시설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대기 및 악취 처리계획, 소음 및 진동 처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라. 성능보증(설계기준)의 적정성(20점)

- 장기간의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설이 제안자가 제시한 성능보증(설계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운영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보증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국내 유사시설 운영 시 문제점 파악 및 개선하기 위한 반영사항을 평가함.

② 시설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70점)

가.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계획의 적정성(30점)

- 사업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계획 및 공종별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수선 및 대수선 계획 및 투입 스케줄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15점)

-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구성 및 업무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시설운영 중 근무자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반영사항의 적정성을 평가함.

다. 비상시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15점)

-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및 대처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라. 기술이전 및 운영교육계획의 적정성(10점)

- 과업 진행중 습득된 기술의 효과적인 이전계획, 교육훈련계획 등을 평가함.
- 운영인력의 소내 교육 및 위탁교육 항목 및 주기의 적정성을 평가함.

1.3 수요(50점)

(1) 수요의 적정성(50점)

① 수요 추정방법의 적정성(20점)

가. 기본가정, 기초 자료의 수집 등 조사의 적정성(10점)

- 기본가정, 기초 자료의 수집 등 조사 및 수요추정방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함.

나. 상위계획의 검토 및 반영의 적정성(10점)

- 상위계획의 검토 및 반영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② 추정수요 산정의 적정성(20점)

- 추정수요 및 시설규모 산정의 적정성

-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수요추정방법에 의한 추정수요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함.

③ 바이오가스 생산량 산정의 적정성(10점)

- 추정 바이오가스 생산량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함.

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1. 가격부문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1.1 출자자의 구성(50점)

(1) 출자자의 참여정도 (50점)

① 출자자의 출자비율(50점)

가.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20점)

- $[(\text{제안 출자비율} \div \text{최고 제안 출자비율}) \times \text{배점}(20\text{점})]$ 의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함.

· 제안 출자비율: 해당 컨소시엄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 최고 제안 출자비율: 컨소시엄별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중 최대비율

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0점)

-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율(30점)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율	60%이상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20%미만
점수	30점	25점	20점	15점

※ 지역건설산업체 참여확약서(<양식 33>)의 기재요율로 평가함

1.2 가격평가(400점)

(1) 사용료 요구수준 (300점)

① 사용료 요구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함.

$$\text{가. } Y = - 0.02170697 \times X + 4209.1218$$

X: 불변 제안 통합사용료(원/톤)

※ 불변 제안 통합사용료는 187,860원/톤을 초과하여 제안하면 실격 처리하며, 사용료는 2021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평가함.

Y: 평가점수, 최고 득점은 3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건설보조금 요구수준 (100점)

① 건설보조금 요구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함.

$$\text{가. } Y = - 0.0148776 \times X + 606.25$$

X: 불변 제안 건설보조금(백만원)

※ 총 건설보조금에 대한 한도(지원금액 37,809백만원 또는 지원을 53.91%)를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하며, 건설보조금은 2021년 1월 1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함.

Y: 평가점수, 최고 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제49조 감점기준의 운용

(1) 평가항목 및 배점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제안 준수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미준수 등 제안내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고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누계 한도 6점 내에서 최종 평가득점에서 감점함.

① 각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은 다음과 같으며, 감점요소 위반 시 각 항목별 2점씩 감점함(감점한도 총 6점).

감점 요소	감점 배점	감점한도	누계 한도
1. 쪽수 위반	2	- 제한규정 위반 시 2점 - 1쪽이라도 초과할 경우 감점	6점
2. 컬러면수 위반	2	- 제한규정 위반 시 2점	
3. 지질	2	- 제한규정 위반 시 2점	

가. 쪽수: ‘제31조(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에서 제시한 쪽수 이내

나. 컬러면수: 총 10면 이내

다. 지질: 모조백상지 100g이내/m²

[부록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 목 차 -

1.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84
1.1 사업제안서의 구성 및 제출부수	84
1.2 사업제안서의 감점 규정사항	86
1.3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86
1.4 언어, 화폐단위 및 SI 단위	87
1.5 사업제안서의 목차	87
2. 사업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88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	88
제2권 본보고서(기술부문)	90
제3권 본보고서(가격부문)	93
3. 양 식	95

1.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 (1) 사업제안서 중 본고서, 부속서류의 원본 표지에는 사업제안법인의 명칭 [예: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가칭)○○주식회사]을 기재하고, 원본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2) 사업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또는 한글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수치자료분석은 마이크로소프트엑셀 등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제안서류 중 본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제안서류 작성 시 사용된 수치자료는 USB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임의 출력하였을 경우 그 출력물은 제출된 사업제안서와 일치하여야 함.
- (3) 관련 재무자료는 회계법인 등 해당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 (4) 사업제안자는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평가 완료 전에 반환하지 않음.
 - ① 단, 주무관청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록 1]의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② 사업제안서는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제안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1.1 사업제안서의 구성 및 제출부수

- (1) 사업제안서류는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 (가격부문 제외), 제3권 가격부문 본보고서(기술부문 제외), 제4권 부속서류 (부속서류 I, II)로 구분하여 나누어 제출하고, 제3권 사업제안서(가격부문 본보고서)와 제4권 부속서류 중 부속서류 I (가격부문 증빙서류), 부속서류 II (공사비 내역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운영비 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류	규격	허용 쪽수	제출 부수		비고
			원본	사본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A4	-	1부	7부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A4	-			<양식1, 2>
- 서약서	A4	-			<양식3, 4> 인감신고서 포함
- 기타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A4	-			<양식5>~<양식16>
- 감사, 결산보고서(5년)	A4	적정쪽수	1부	1부	-

제안서류			규격	허용 쪽수	제출 부수		비고
					원본	사본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가격부문 제외)			A4	300쪽	1부	20부	<양식17~18, 20, 22>
제3권 가격부문 본보고서(기술부문 제외)			A4	100쪽	1부	5부	<양식19, 21, 23~31> 밀봉하여 첨부
	－ 공사비 내역서 요약		A4				
	－ 운영비 내역서 요약		A4				
	－ 재무모델(USB)		엑셀				
제4권 부속서류			－		－	－	－
	부속서류 I	기술부문 증빙서류	A4	적정 쪽수	1부	5부	－
		가격부문 증빙서류	A4	적정 쪽수	1부	2부	밀봉하여 첨부
	부속서류 II	기본설계보고서	A4	300쪽	1부	15부	－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A4	적정 쪽수	1부	5부	－
		기본설계 도면	A3	적정 쪽수	1부	4부	－
		공사비 내역서	A4	적정 쪽수	1부	2부	밀봉하여 첨부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A4	적정 쪽수	1부	2부	밀봉하여 첨부
		운영비 내역서	A3	적정 쪽수	1부	2부	밀봉하여 첨부
		구조계산서	A4	적정 쪽수	1부	2부	－
		수량 산출서	A4	적정 쪽수	1부	2부	추후제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USB)			엑셀 및 한글		1set	2set

주 1)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1단계 평가시 사용하는 자료임

2) 제2권, 제3권 보고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양식에 준하여 작성함

3) 제4권 부속서류 I: 본 보고서(기술부문, 가격부문)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본 보고서의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함

4) 제4권 부속서류 II: 본 보고서와 부속서류 I 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류임

5) 추후 제출서류는 주무관청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통보 후 7일 이내에 제출함

6) 사업제안서 원본에 “각종증명서 · 확인서 · 등본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증빙서류” (이하 “등본” 이라함)를 첨부할 경우

- 동 등본에 대해서는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지질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쪽수, 컬러면수, 지질에 대해서는 사본을 기준으로 함

- (2)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류의 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
- (3) 사업제안서는 원칙적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보고서나 부속서류에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 ① 사업제안서 평가 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사업제안자는 부속서류에 이를 포함하여야 함.
- (4) 본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각종 증명서는 본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함. 다만, 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5)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명시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1.2 사업제안서의 감점 규정사항

- (1) ‘1.1 사업제안서의 구성 및 제출부수’에서 제시한 쪽수, 컬러면수(총 10면 이내), 지질(모조백상지 100g이내/㎡)에 대해 위반시 각 항목별 2점 감점(감점한도 총 6점)

감점 요소	감점 배점	감점한도	누계 한도
1. 쪽수 위반	2	- 제한규정 위반시 2점	6점
2. 컬러면수 위반	2	- 제한규정 위반시 2점	
3. 지질	2	- 제한규정 위반시 2점	

1.3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 (1)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용지 양면에 가능한 12포인트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함.
- (2) 쪽수: 사업제안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참조
 - ① 표지(도서의 앞뒤 각1장)를 제외한 사업제안서에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로 쪽수를 표기하며, 복사물일 경우 수기(手記)로 표기 가능
 - ② 쪽수 산정시 표지(도서의 앞뒤 각1장)만을 제외하며, 목차 및 간지 등은 포함함.
 - ③ A3 이상은 단면을 4쪽으로 산정함(양면은 8쪽으로 산정함). 단, 기본설계도면(단면 기준) 및 운영비 내역서(단면 기준)는 A3를 1쪽으로 산정함.

(3) 컬러면수 규정

- ① 사업제안서류를 구성하는 전체 서류 중 컬러면수는 총 10면을 초과할 수 없음.
가. 표지는 컬러 사용을 금지함.
- ② 일부분이라도 컬러를 사용한 경우에도 컬러면 사용으로 간주함. 단, 간지를 색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함.
- ③ 컬러면수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음.
가. A4 단면에 컬러를 사용: 컬러면 1면으로 산정
나. A4 양면에 컬러를 사용: 컬러면 2면으로 산정
다. A3 이상의 용지 단면에 컬러를 사용: 컬러면 2면으로 산정
라. A3 이상의 용지 양면에 컬러를 사용: 컬러면 4면으로 산정

(4) 지질

- ① 모조백상지(100g 이내/㎡). 단, 표지, 간지, 컬러면에 대한 지질제한은 없음.
- ② 사업제안서 제출시 지질에 대한 확인서 제출.

(5) 제본방법

- ① 제출서류는 무선철 좌철

1.4 언어, 화폐단위 및 SI 단위

- (1) 사업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또한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요약 번역본을 첨부함.
- (2) 화폐단위는 원화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환율은 가격산출 기준일의 금융결제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 (3) SI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SI 단위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SI 단위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1.5 사업제안서의 목차

-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 ① 부속서류는 본보고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함.

2. 사업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

제 I 장 제출서류

- (1) 1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공고의 1단계 평가 항목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 II 장 출자자의 구성

- (1) 출자자별로 작성하되, 관계 증명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 ① 사업제안자의 출자자 구성 및 현황을 <양식 5> 및 <양식 6>에 따라 작성함.
 - ②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인 경우 <양식 5>의 구성원의 역할에 별도 표기함.
 - ③ 시공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체는 출자지분이 없더라도 <양식 5>의 구성원의 역할에 출자지분을 0%로 표시하고 시공지분율을 표시함.
- (2) 출자자의 연혁을 <양식 7>에 따라 작성함.
 - ① 출자자의 연혁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첨부함.
- (3) 출자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을 <양식 8>에 따라 작성하되, 출자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출자자가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10% 이상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함.
 - ① 소유자, 소유 주식수, 금액, 지분율 등이 표시된 입수 가능한 최근의 주주 명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기준일자 명시함.
- (4) 손익계산서
 - ①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 손익계산서를 <양식 9>에 따라 작성
- (5) 재무상태표
 - ①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 재무상태표를 <양식 10>에 따라 작성
- (6) <양식 9>, <양식 10> 은 한글, 엑셀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제Ⅲ장 사업능력

(1) 설계능력

- ① 설계능력은 <양식 12>에 따라 작성하되,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시공능력

- ① 시공능력은 <양식 12>에 따라 작성하되,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운영능력

- ① 운영능력은 <양식 12>에 따라 작성하되,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재무능력

- ① 재무능력 평가표를 <양식 16>에 따라 작성함.

- ② 1단계 평가기준에서 재무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③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 으로 평가받을 경우에는 과거 5년간(또는 실적 있는 기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④ 3권에 포함될 출자자별 출자예정금액을 제출하여야 함.

- (5) 설계, 시공 또는 운영 관련 출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업체의 참여확약서<양식 11>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이후에 시공사 또는 운영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사전심사 규정에 부합하는 공사 발주 계획서 또는 운영사 선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제2권 본보고서(기술부문)

제 I 장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개요

- (1)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 타당성 및 사업개요를 제시하여야 함.

제 II 장 건설계획

제1절 기술계획

- (1) 각종 상위계획도서의 검토 사항 및 현장 여건의 검토 사항을 기술함.
- (2) 공법 및 설계의 적정성
 - ① 기술요소(공법 및 시공계획) 관련계획을 기술함.
 - ② 설계안을 제시하고, 도면 및 기타 자료는 부속서류에 첨부함.
 - ③ 사전조사, 공법설정, 설계기준의 설정,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 ④ 계획단면의 구조적 안정성, 설계기준 및 제시방의 부합성, 적용하중 및 강도 설정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 ⑤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기존자료 분석 및 설계에의 적용 등 지반분야 설계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 (3) 환경친화적 계획
 - ①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환경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제2절 시공계획

- (1) 시공관리조직 구성계획
 - ① 시공사 선정 및 공사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2) 시공관리계획
 - ① 분야별 세부시공계획 및 사전검토사항, 자원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3) 공정계획
 - ①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표시된 전구간의 예정공정표(예정공정관리도)를 제출함.
- (4) 견실시공
 - ① 공사품질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적정보험가입 등 견실시공 보장방안을 기술함.

(5) 건설 중의 환경관리 · 교통처리 · 민원대처 계획

① 건설공사 시행중의 환경관리 및 교통처리대책과, 민원대처계획을 기술함.

(6) 행정지원 요구사항

① 사업제안자는 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인 · 허가 등 정부(지자체 포함)의 재정투입을 요하지 않는 지원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함.

제Ⅲ장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제1절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1) 시설안전관리계획은 시설의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긴급재난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함.

(2) 환경친화적 운영계획은 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대기 및 악취처리계획, 소음 및 진동처리계획을 제출함.

(3)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은 시설에 대한 효율적 · 창의적 운영방안을 기술하며, 시설물별 운영방법, 처리 및 보증치 관리계획, 원가절감계획, 물품 장비투입 계획 등을 수립함

제2절 시설유지보수계획

(1) 시설유지보수계획은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

①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계획

② 본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계획

③ 유지보수를 위한 자기진단계측 system 구축계획

(2) 본 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양식 17>에 따라 작성함.

(3) 유지보수비 비용 산정의 적정성은 유지보수비 산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함

제3절 사업관리계획

(1) 사업관리조직

①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건설기간 중 및 시설준공후로 구분하여 <양식 17>에 따라 작성함.

(2)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양식 18>에 따라 작성함.

(3) 경영진 충용기준

①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충용기준을 기술함.

② 경영진의 경력요건 등 충용기준을 <양식 20>에 따라 작성함.

제Ⅳ장 수요추정방법 및 과정의 적정성

- (1) 수요예측을 위한 기본가정, 상위계획의 반영방법 등 수요추정 과정 및 전망에 대하여 기술함.
- (2) 상위계획 및 지역 현황에 따른 연도별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여 연도별 수요량을 <양식 22>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함
- (3) 연도별 수요량은 사업제안자가 추정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처리량 추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제3권 본보고서(가격부문)

* 가격부문 본보고서는 기술 및 가격 분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보고서(기술부문 본보고서 및 가격부문 본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함.

제 I 장 총민간투자비 및 운영비의 산정

(1) 총사업비, 총민간사업비,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등을 제시

- ① 제시된 총사업비 상한선을 참고하여 총사업비의 산정을 <양식 23>에 따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부속서류에 포함함.
- ② <양식 23>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 ③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을 <양식 24>에 따라 작성함.

(2) 운영비 제시

- ① 연도별 운영비 예산 투입계획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양식 21>에 따라 작성함.

제 II 장 자본투입계획

(1)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출자자별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시

- ① 자기자본투입계획을 <양식 25>에 따라 작성함.

(2)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타인자본 조달계획, 대출확약서(의향서) 등을 제시

- ① 사업제안자의 연도별 자금차입계획을 <양식 26>에 따라 작성함.

제 III 장 예비재원 조달계획

(1) 예비재원 조달계획, 추가출자 확약서 등을 제시

제 IV 장 현금흐름 분석 및 추정 재무제표

(1) 재정지원금 규모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을 <양식 27>에 따라 작성함.

- ① <양식 27>은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2) 추정재무제표

- ① 추정재무제표는 사업의 전기간 (건설기간 포함)에 걸쳐 작성함.
- ② 추정손익계산서를 <양식 28>에 따라 작성하되, 가정한 기준을 제시함.
가. 환율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금융결제원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나.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은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내에 관리운영권의 정액상각으로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

다. 운영설비비는 본 공고일 현재 세법에 따라 적용하는 내용년수를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운영기간 종료 후 잔존가치는 “0(Zero)” 가정).

라.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은 본 공고일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함.(단, 본 공고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공고를 따름)

마. 차입금리는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함.

③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하되,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④ 추정재무상태표를 <양식 29>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⑤ 추정현금흐름표를 <양식 30>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 산출 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가. 직접법으로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함.

⑥ <양식 28>, <양식 29>, <양식 30>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 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제 V 장 사업수익률

(1) 수익률

① 사업제안자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요구수익률 및 그 산정근거를 작성함.

② 세후수익률도 함께 제시함.

제 VI 장 정부지원 요구사항

(1) 건설보조금 요구액 및 시기는 <양식 32>에 따라 작성함.

(2) 정부 및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술하되 정부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사유 등을 상세히 제시함.

3. 양 식

- < 양 식 1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 양 식 2 >: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 < 양 식 2-1 >: 설립예정법인의 구성사업체 현황
- < 양 식 2-2 >: 제안자 현황(기존 법인)
- < 양 식 3 >: 서약서
- < 양 식 4 >: 인감신고서
- < 양 식 5 >: 출자자구성
- < 양 식 6 >: 출자자현황
- < 양 식 7 >: 출자자 연혁
- < 양 식 8 >: 출자자의 주주현황
- < 양 식 9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 양 식 10 >: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 < 양 식 11 >: 시공(설계, 운영) 참여확약서
- < 양 식 12 >: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
- < 양 식 13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 < 양 식 14 >: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 양 식 15 >: 정상가동 실적 증명서
- < 양 식 16 >: 재무능력 평가표
- < 양 식 16-1 >: 재무능력 평가표(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 양 식 17 >: 조직도
- < 양 식 18 >: 기술인력투입계획
- < 양 식 19 >: 보험가입계획서
- < 양 식 20 >: 경영진 채용기준
- < 양 식 21 >: 연도별 운영비 예산
- < 양 식 22 >: 수요량 산정
- < 양 식 23 >: 총사업비 산정
- < 양 식 24 >: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 < 양 식 25 >: 출자자의 자기자본투입계획
- < 양 식 26 >: 연도별 자금차입계획
- < 양 식 27 >: 현금흐름분석
- < 양 식 28 >: 추정손익계산서
- < 양 식 29 >: 추정재무상태표
- < 양 식 30 >: 추정현금흐름표
- < 양 식 31 >: 사용료 산정을 위한 총민간사업비
- < 양 식 32 >: 건설보조금 요구액 및 시기 산정
- < 양 식 33 >: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협약서
- < 양 식 34 >: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

※ 제3권 가격부문 본보고서와 관련된 양식은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양식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인 명		② 전화번호	
③ 대 표 자		④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최대출자자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 1.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2. 설립예정법인이 컨소시엄 명의로 제출하는 경우 모든 출자(예정)자가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거나 컨소시엄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는 경우 다른 출자(예정)자들이 대표자에게 대표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

<양식 2>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상 호		대 표 자	성 명	
본 사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발기인수		
설립자본금 (수권자본금)	/	발기연월일		
종업원수		설립예정일		
주거래은행		결산월		
법인설립계획일정				

<양식 2-1>

설립예정법인의 구성사업체 현황

번호	업체(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비고

주) “비고” 란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 구성사업체 여부를 표기함

<양식 2-2>

제안자 현황[기존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업 태		사 업 장		
종 목				
주 요 제 품		설 립 일 자		
총 자 산	억 원	결 산 일		
납 입 자 본 금	백 만 원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 만 원	종 업 원 수		명
입찰참가자격 제 한·정 지	기 간			
	사 유			
법인 연혁				

- 주) 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자격 제한·정지란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부속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관 1부

<양식 3>

서 약 서

본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공고, 평가, 협상, 실시협약 체결, 계약의 이행(준공 이후 운영기간 포함) 시에 아래 각 호의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준공 이후 사용기간 동안에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고,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2.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금품, 향응등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협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사업추진 조건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협상 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4.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알선, 청탁 등을 통하여 계약에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5.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제안서 및 그 부속서류들은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으며, 위조 변조하지 않은 진실된 것임을 확인하며, 만약 그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함과 동시에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 (인)

목포시장 귀하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은 별도 첨부함.

<양식 4>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제안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 투자사업(BTO) 제안 시부터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목포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제안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목포시장 귀하

주) 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서명 및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을 제출함.

<양식 5>

출 자 자 구 성

구분	출자자명	소재지	소유 주식수	출자액 (원)	출자비율 (시공 지분율)	총민간 투자비 대비 비율	구성원의 역할
합계					100%		

주 1) 출자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함.

주 2) 구분란에는 건설출자자, 운영출자자, 재무적 투자자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 및 운영에 모두 출자하는 경우 출자비율을 각각 명기하여야 함.

주 3) 구성원의 역할란에는 사업주간사, 시공사, 운영사 등을 표시함.

주 4)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사업자 및 계열회사 전체 출자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개별출자자 및 출자내용을 ()로 표시함.

주 5) 출자비율 중 시공사의 ()는 시공지분율을 의미함.

주 6) 제3자 제안공고문의 추정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총민간투자비로 가정하여 작성함.

<양식 6>

출 자 자 현 황

○ 출자자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업 종	
본사 주소		신용평가 등급	
사업장 주소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억 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억 원	총 자 산	억 원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주소:	

주 1) 매출액, 총자산은 본 공고일 기준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주 2)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7>

출 자 자 연 혁

○ 출자자명:

년 월 일	내 용

주)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8>

출자자의 주주현황

(년 월 일 기준)

주 주 명	관 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금 액 (천 원)	지분율 (%)
계					100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주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양식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출자자:

○ 작성기준일(결산일):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100		100		100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전 순이익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주 2) 공인회계사의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경우, 위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인 감사보고서는 생략 가능함.

주 3)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당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출자자의 경우에는 해당양식의 주당손익을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음

<양식 10>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 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부 채						
I. 유동부채						
II.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I. 자본금						
II. 자본잉여금						
III. 자본조정						
IV.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V.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부채 · 자본 총계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주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주 3) 공인회계사의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경우, 위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인 감사보고서는 생략 가능함.

<양식 11>

시공[설계, 운영] 참여확약서

목포시장 귀중

본 법인은 (가칭)OO주식회사의 시공(설계, 운영) 참여회사로서 목포권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제안서의 (설계, 시공, 운영)계획에 따라 (설계, 시공, 운영)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제안서의 (설계, 시공, 운영) 관련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OO년 OO월 OO일

시공(설계, 운영) 참여회사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감)

<양식 12>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

사업제안자 명칭:

건설회사 명칭:

(단위: 백만원)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 주 1) 시설규모는 시설종류별로 상세히 기재함(예; 환경사업의 경우 처리용량, 사업의 위치 등).
- 주 2) 수주형태는 단독, 공동을 구별하여 기입하고, 공동수주일 경우 참여지분율을 기재하고, 사업비는 총도급(계약)액 및 자기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주액을 기재함(단일사업을 차수별로 계약시 전체 금액).
- 주 3) 본 양식 1장당 1개사로 하고 복수의 건설사가 있을 경우에는 장수를 늘려서 작성해야 함.
- 주 4)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 주 5)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첨부해야 함.

<양식 13>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I. 일반적인 사항				
1) 공사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 시 공 자 (대 표)	3-1) 회사명		3-3) 대 표 자	
	3-4) 영업소재지		3-5) 전화번호	
4)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 해당란에 ○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 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 표			
6) 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7)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하도급공사 (), 기타 () ※ 해당란에 ○ 표			
II.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하도급실적 포함)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처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3) 공사금액				
3-1) 준공금액(하도급금액)				
3-2)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3-3) 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 (점수) 점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4) 전체공사 시공규모: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 전체 실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 규모, 방법(공법)			
6)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6-1)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준공금액			
6-2)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Ⅲ.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기의 내용과 준공실적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 하였습니다. 20 . . .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주 소: 회 사 명: 대 표:			

-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 주 2)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 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주 3)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주 4)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 주 5) 국내실적의 경우 당해 하수처리시설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야함.
- 주 6) 국외실적인 경우 당해 하수처리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주체의 확인을 받아야함
(번역 공증 필요).

※ <양식13>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는 발급기관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가능함. 다만, 공사명, 공종, 시설용량과 지분율(공동참여인 경우에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주기관의 날인(전자서명 포함)이 있는 원본 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양식 14>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제안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구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제3자 제안 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주 2)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는 발급기관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가능함. 다만, 용역명, 용역종류, 시설용량과 지분율(공동참여인 경우에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주기관의 날인(전자서명 포함)이 있는 원본 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양식 15>

정상가동 실적 증명서

1. 운전 개시일	년 월 일				
2. 연간 가동 시간	가동년도	가동현황			
	00 년	가동일수	일/년(평균가동	시간/일)	또는 처리량 톤/년
	00 년	가동일수	일/년(평균가동	시간/일)	또는 처리량 톤/년
	00 년	가동일수	일/년(평균가동	시간/일)	또는 처리량 톤/년
3. 문제 발생 현황	설 비 명	횟 수			
4. 가동실적					
시설명(상호)					
공사명					
기술공급사					
설비형식					
시설용량					
저가동율의 이유					
운영관리기관 의견					
상기와 같은 정상가동 실적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운영주체 (인) 발급기관 (인)					

<양식 16>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제안자 명칭:

출자자 명칭:

(1) 신용등급

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등급		
신용평가기관		
유효기간		

(2)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단위: 백만원)

구분	연평균 (A)	5년 합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							
(A) × 5							

(3) 해당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출자예정금액

구분	신용등급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회사채	기업어음	
출자능력 인정액			
출자자의 출자예정액			

주 1) 출자자별로 작성함.

주 2) 자기자본 조달능력 평가를 신용등급에 의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 증빙서류 제출함.

주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주 4) 감사받은 재무재표(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연수의 합계 및 해당연수로 평균한 연평균금액을 기재함.

주 5) 제3자 제안공고문의 추정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총 민간투자비로 가정하고 <양식5>에서 제시된 출자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주 6)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에 대한 재무능력 평가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주 7) 공인회계사의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경우 위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인 감사보고서는 생략 가능함.

<양식 16-1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제안자 명칭:

출자자 명칭:

(1) 해당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출자예정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가입약정(예정)금액 [A]	000
기약정(시행)금액 [B]	000
[C] = [A] - [B]	000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예정금액	000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예정금액 X 120%	000

※ 투자자 또는 투자예정자 구성 현황을 첨부하여야 함.

상기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0000년 00월 00일

법 인 명: 000주식회사
(가칭)000 집합투자업자)

대표이사: 0 0 0 (인)

법 인 명: 00회계법인
대표이사: 0 0 0 (인)

목포시장 귀중

<양식 17>

조 직 도

1. 건설기간 중 조직	
2. 시설준공 후 조직	

<양식 18>

기술인력 투입계획

일련번호	기술분야	자격종목	투입인원	비 고

주) 기술분야, 자격순위별로 기재함.

<양식19>

보험가입계획서

(단위: 백만원)

가입보험	예정요율	예정부보대상	보험기간	청약예정보험사	비 고
계					

주 1) 대상물이 복합공종일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주 2) 청약예정보험사의 확인을 받음.

<양식 20>

경영진 채용기준

직위 및 담당업무	학력 및 경력	비 고

주 1) 학력은 최종학력 중심으로 기재하되, 대학이상의 경우 대학부터 기재함.

주 2) 경력은 동일업종의 주요경력 및 회사 근속년수를 기재함.

<양식 21>

연도별 운영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① 인건비						
② 제경비						
③ 운영경비						
- 약품비						
- 전력비						
- 연료비						
- 상하수도비						
- 최종처리비						
- 소모품비						
- 보수비						
- 대수선비						
- 법정검사비						
- 기타						
④ 보험료						
⑤ 유형자산대체비						
운영비용 (백만원/년)						
추정처리량(m³)						
연간 변동 운영비용						
연간 고정 운영비용						

주 1) 2021년 1월 1일 현재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함.

주 2) 추정처리량은 운영비용 및 사용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추정량임.

주 3) 전력비, 약품비, 연료비, 상수도비 등은 변동 운영비용임.

<양식 22>

수요량 산정

구 분	발생량(수요량)					계
년						

주) 수요량은 운영비용 및 사용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추정량임.

<양식 23>

총사업비 산정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보 상 비						
⑤ 부 대 비						
⑥ 운영설비비						
⑦ 제세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총사업비 Σ(①~⑧)						

주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 참조

주 2) 2021년 1월 1일 기준의 불변가격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24>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년	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총사업비(불변)						
건설보조금(불변)						
총민간사업비(불변)						
물가변동비						
건설이자						
총투자비						
건설보조금(경상)						
총민간투자비						

주) 물가변동비 2.0%를 적용

<양식 25>

출자자의 자기자본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조달계	년	년	년	년	년
자체자금조달						
- 내부유보자금						
- 유상증자						
- 기타						
금융기관 차입금						
기 타						
계						

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함.

<양식 26>

연도별 자금차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조달총계	년	년	년	년
자기자본(A) ·내부유보자금 ·유상증자 ·기타					
타인자본(B) ·선순위차입금 ·후순위주주차입금 ·기타					
누적자기자본비율 [누적A/누적(A+B)]					

주 1) 누적자기자본비율은 매년도말 현재의 누적자기자본금액을 매년도말 현재의 누적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합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주 2)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함.

<양식 27>

현금흐름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① 총민간사업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건설보조금(차감)						
② 운영비용 ·인건비 ·제경비 ·운영경비 ·보험료 ·유형자산대체비 ·						
③ 기타(정부의 건설보조금 등)						
현금유출계 ①+②+③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⑤ 사용료 수입 ⑥ 기타						
현금유입계 ⑤+⑥						
현금유입항목의 현재가치						
순현금흐름(세전)						
순현재가치						
사업수익률(세전실질)						
산정사용료	원/톤					
법인세비용						
순현금흐름(세 후)						
사업수익률(세 후실질)						

주 1) 실질수익률 적용은 회사의 실제적 내부 수익률임.

주 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년도까지 작성함.

주 3) 2021년 1월 1일 기준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28>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법인세전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양식 29>

추정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유 동 자 산									
당 좌 자 산									
(매 출 채 권)									
재 고 자 산									
기타유동자산									
비 유 동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매 입 채 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장기차입금									
사 채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비유동 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양식 30>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 - -									
현금의 증가									
기초의 현금(D)									
기말 현금									
누적부채상환비율(%)									

주 1)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주 2) 누적부채상환비율= $[(A+B+D+이자지급액) \div \text{차입원리금상환액} \times 100(\%)]$

<양식 31>

사용료산정을 위한 총 민간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부 대 비						
⑤ 운영설비비						
⑥ 제세공과금						
⑦ 영업준비금						
⑧ 총사업비 $\Sigma(① \sim ⑦)$						
⑨ 건설보조금, 보상비 등						
⑩ 총민간사업비 ⑧ - ⑨						

주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 참조

주 2) 2021년 1월 1일 기준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32>

건설보조금 요구액 및 시기 산정

(단위: 백만원)

요구액 요구시기		불 변 가 격	경 상 가 격
○○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년			
○○년			
○○년			
○○년			

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 2.0%의 물가변동비를 적용하여 경상금액 산출

<양식 33>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협약서

목포시장 귀중

본 법인은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사업제안자로서 목포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방침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을 협약합니다.

- 다 음 -

1. 본 사업 공사 금액의 00% 이상을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시기까지 제출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참여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성실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법 인 명: (가칭)000주식회사

대 표 자: 00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인)

<양식 34>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

사업제안자

회사명

소재지

담당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핸드폰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제출합니다.

자료명		페이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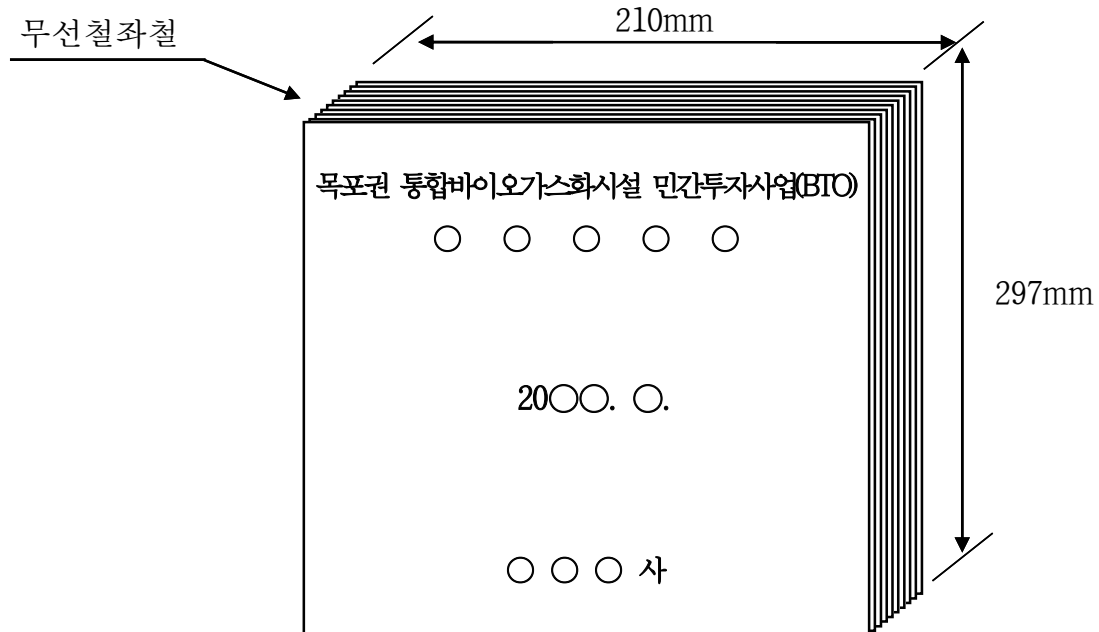
주) 질문은 본 양식 1장당 1개의 질문으로 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도록 함.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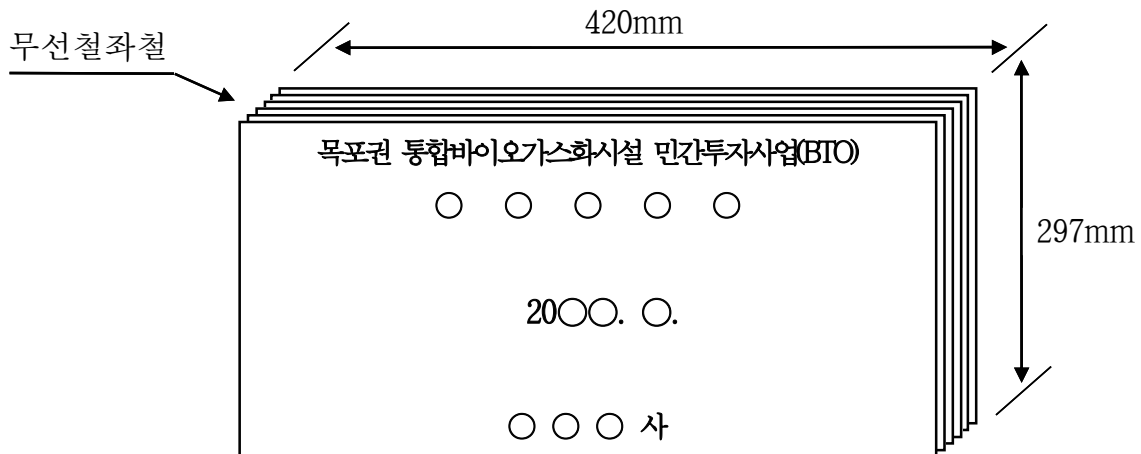
대 표 명 (인)

[붙임] 각종 보고서 표지양식

1. 사업제안서 및 설계보고서



2. 설계도면



※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등으로 구분

주) ‘○○○○○’ 은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제2권 기술부문 본 보고서(가격부문 제외), 제3권 가격부문 본 보고서(기술부문 제외), 제4권 부속서류(Ⅰ,Ⅱ)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 (글씨크기, 글씨체 및 글씨 간격 등은 사업제안자 임의로 작성)

[부 록 2]

기술적 요구사항

- 목 차 -

I. 법규 및 규칙 137

II. 적용 코드 및 표준 138

III. 설계기준 140

I. 법규 및 규칙

- 1) 환경정책기본법, 동시행령
- 2)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3)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4) 소방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5)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7)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9) 하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10)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11) 자원순환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13) 환경영향평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14)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15)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16)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17)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 18)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2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21)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22)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2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25) 악취방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26) 전원개발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2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 31) 건설기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32) 도시가스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33) 목포시 조례
- 34) 신안군 조례
- 35) 기타 관련 법규 등

II. 적용코드 및 표준

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 가) 한국산업규격(KS)
- 나)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해양부)
- 다) 강구조계산 기준 및 동해설(대한건축학회)
- 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 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 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아) 한국전력공사 내규(한국전력공사)
-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
- 차) 전기공급 규정
- 카)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 타)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 파) 소방법 및 기타 소방관련 규격
- 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 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대한전기협회)
- 너)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 더) 국가건설기준코드(국가건설기준센터)

2) 국제규격

- 가)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ISO)
- 나)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3) 상기 코드 및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

- 가)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AISI)
- 나)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 다)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 라)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 마) American Welding Society(AWS)
- 바)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 사) Crane Safety Regulation, Japan
- 아) Crane Structural Code, Japan
- 자)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USA(IEEE)
- 차)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USA(IES)
- 카)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ISA)
- 타)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JWWA)
- 파) Japanese Building Code And Steel Structural Calculation Standard
- 하) Japanese Electrotechnical Committee(JEC)
- 거) National Electric Code, USA(NEC)
- 너) National Electric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NEMA)
- 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de, Occupational Administration, Japan
- 러) Paving Design Standard for Premise, Maintenance Association, Japan
- 머) Sheet Materi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USA(SMACNA)
- 벼) Standard of the Japanese Electrical Committee, Japan(JEC)
- 서)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
- 어) The Standard of Japanese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JEM)
- 저)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TEMA)
- 처)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 커) Uniform Building Code(UBC)
- 터)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 퍼)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 허) Deutsche Industrie Normen(DIN)
- 고) Japanese Industrial Standard(JIS)

Ⅲ. 설계기준

- 1)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지침서(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 2) 「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술지침서-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병합-(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6)」

※ 상기 열거된 ‘기술지침서’ 등의 내용이 설계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